

2020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활동실적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보에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11년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출범되어 올해로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구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청렴감시와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은

우선, 구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히 법규의 위법성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감정적 대립으로 생긴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고자 설득하며 중재하고 고민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서대문구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활동으로 공정하며 투명하고 청렴하게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감독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서대문구청의 옴부즈만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저희들의 제안에 적극 활동 해주신 서대문구청 공무원들과 옴부즈만 활동 및 운영을 위한 지원에 물심양면 힘써주신 문석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동

목 차

제1부	음부즈만 운영개요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9
제2장	제5기 음부즈만 소개	11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12
제2부	음부즈만 운영성과	
제1장	고충민원 처리	17
1.	고충민원 처리 결과	
2.	2020년 고충민원 처리 현황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27
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처리 결과	
2.	2020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현황	
제3부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1장	건축주택분야	33
1.	연희동 신축빌라 창문 가림막설치 추가요청	
제2장	도시교통분야	37
1.	불법주정차 단속반 직원에 대한 항의	
제3장	공원녹지분야	40
1.	가재울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바닥교체 민원	
제4장	보건복지분야	44
1.	소공원 등에서의 청소년 일탈문제	
2.	위탁법인 선정 민원	
제5장	일반행정분야	58
1.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문의	
제6장	재무행정분야	66
1.	부당한 입찰자격 문의	

contents

제4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1장	공사	75
1.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건축 기계설비)(2차)	
2.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A3구역 비탈면 안정화 공사	
3.	대현문화공원 정비공사	
4.	자연사박물관 3층 공통공원 및 매표소 증축공사(건축.기계)	
제2장	용역	87
1.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	
2.	김현식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설치용역	
3.	서대문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4.	2020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5.	2020년 관내 도로지하 공동탐사 용역	
6.	남가좌동 좌원상가 정비사업 수립 용역	
7.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8.	천연층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장기계속)(1차)	
제3장	물품	126
1.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공사(정보통신) 통합배선반 구매 설치	
2.	2020년 프린터소모품 구매	
제4장	수의계약	132
1.	민간 빅데이터 구매	
2.	2019년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추석 선물세트 구매	
3.	2020년 서대문 정(情)담은 푸드마켓 설 선물세트 구매	
4.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용역	
5.	옥천교 등 12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절계 용역	
6.	2019년 옥상녹화 조성사업	
7.	2019년 사망시설 보수공사	
8.	학교 내 수목 정비사업(상반기)	
9.	창천문화공원 그늘목 식재사업	
10.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관련 서버 교체	

제 1 부 음부즈만 운영 개요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9
제2장 제5기 음부즈만 소개	• 11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 12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도입배경

서대문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2.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3. 추진경과

- 2011. 04. 2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1. 05. 11. 시민감사옴부즈만(5인) 공개모집 및 선정
- 2011. 05. 30. 제1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 2011. 06. 0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제1차 정례회의 개최)
- 2011. 06. 1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 2012. 03. 17. 시민감사옴부즈만 인터넷 민원접수 개시
- 2012. 03. 20. 2011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2012. 05. 29.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옴부즈만 운영사례 발표
- 2013. 02. 27.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분야 수상
- 2013. 03. 26. 「2012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3. 05. 29.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4, 신규1)
- 2013. 11. 19. 「시민감사옴부즈만 토론회」 개최
- 2014. 03. 19. 「201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5. 03. 26. 「2014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5. 05. 27.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3, 신규1)
- 2016. 04. 28. 「201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6. 05. 01.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17. 03. 29. 「2016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7. 06. 0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신규2)
- 2017. 11. 30.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워크숍」 지방옴부즈만 발전방안 발표
- 2018. 03. 27. 「201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8. 07. 0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2)
- 2018. 10. 11. 「지방옴부즈만 워크숍」 서대문구 운영현황 및 사례발표
- 2019. 02. 27. 제7회 국민권익의 날 옴부즈만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 03. 13. 「2018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9. 06. 01.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2)
- 2019. 12. 17. 「서울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 서대문구 사례발표
- 2020. 02. 24.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1)
- 2020. 04. 27. 「2019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20. 07. 01.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제2장 제5기 옴부즈만 소개



류정수 대표옴부즈만

● 주요경력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前) (주)브니엘건설컨트 대표이사



김현국 옴부즈만

● 주요경력

前) 감사원 감사관
 · 지방행정감사국 제4과장(부이사관) 등 역임
 前) IBK신용정부(주) 준법관리인
 現)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자문위원



한인혜 옴부즈만

● 주요경력

건축사
 前) (주)21세기건축사사무소
 前) (주)케이더블유엠씨
 現) 디아이건축사사무소



박상권 옴부즈만

● 주요경력

공학박사, 토목시공 기술사
 前) 서울시·서초구 재난치수과장
 現) (주)범한 건설사업부 사업책임



이주한 옴부즈만

● 주요경력

변호사
 現) 서초법률사무소
 現)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원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1. 옴부즈만 자격, 임기, 직무 및 권한

1-1 옴부즈만의 자격

-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하거나 재직 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2 옴부즈만의 임기 및 구성

-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지 위	위촉방법	인원(임기)	신 분	주요기능
구청장소속 업무독립 수행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 위촉	5명(2년)	비 상 임 민간위촉	고충민원 조사 및 청렴계약 감시·평가

1-3 옴부즈만의 직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의 조사·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 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

1-4 옴부즈만의 권한

(1) 시정요구 등의 조치요구 권한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2) 조사결과 공표 권한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조사결과와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옴부즈만의 조치의견 유형】

- 시정요구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취소, 변경, 개선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감사요구 :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행위
- 권고 및 의견표명 :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책 및 제도, 현 실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2. 옴부즈만 업무처리 절차

2-1 고충민원 조사처리

- (1) 민원인이 방문, 서면, 청렴포털(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 후 다가오는 옴부즈만 정례회의(주1회)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
- (2) 정례회의에서 조사가 결정되면 조사 착수 후 3일 이내 민원인에게 조사가 착수되었음을 통지하고 관계부서에도 조사 실시 통보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 (3) 조사는 1개월 이내 종료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 시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민원인에게 통지
- (4) 조사가 완료되면 정례회의에서 조사내용 검토 및 조치의견을 결정 후 민원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관계부서에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의견을 통보

- (5) 읍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부서는 1개월 이내에 읍부즈만에게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지

2-2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 (1) 관련 부서장은 매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읍부즈만에 제출
- (2) 읍부즈만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감시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활동 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 수립
- (3)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감시·평가 대상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후, 대상별 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 감시평가 시행
- (4) 감시평가 대상 사업기간 또는 용역 및 구매 기간이 종료되는 매년 말 감시평가 활동결과 검토 및 관계부서에 대한 조치의견을 정례회의에서 결정 후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의견을 통보
- (5) 읍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부서는 1개월 이내에 읍부즈만에게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의 공사
- 5천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2-3 활동실적 보고 및 공표

- (1) 대표 읍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읍부즈만 활동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 (2) 읍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아래의 사항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구보에 공표

[읍부즈만 공표사항]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 읍부즈만의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 읍부즈만의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불수용 현황

제 2 부 읍부즈만 운영성과

제1장 고충민원 처리

• 17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 27

제1장 고충민원 처리

1. 고충민원처리 결과

1-1 민원처리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건수	직접조사								이첩 등 처리				
		계	조치의견							계	이첩	단순 안내	각하	취하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 중					
2011년 (6~12월)	5	3	1	1	-	1	-	-	-	2	-	-	1	1
2012년	72	30	1	2	13	1	1	12	-	42	36	5	1	-
2013년	126	28	-	-	13	5	5	5	-	98	83	10	1	4
2014년	97	20	-	-	9	3	4	4	-	77	65	7	3	2
2015년	65	18	-	1	7	3	1	6	-	47	28	10	5	4
2016년	44	22	-	-	11	7	3	1	-	22	14	2	4	2
2017년	58	25	-	-	16	7	1	1	-	33	28	3	1	1
2018년	51	24	-	-	18	4	1	1	-	27	18	5	-	4
2019년	35	13	1	-	4	4	2	2	-	22	15	2	-	5
2020년	57	8	1	-	2	4	-	2	-	49	44	-	1	4
계	610	191	4	4	93	39	18	34	0	419	331	44	17	27

☞ 2020년 고충민원 직접조사 건수 계(8)와 조치의견별 합계(9)가 다른 것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이며, 총 8건의 직접조사건 중 2건은 같은 내용(본 민원에 대하여 조치의견 3가지)이기 때문이다.

2020년 읍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57건으로 2019년에 비해 22건이 증가하였고 읍부즈만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은 8건, 이첩민원은 44건으로 이첩민원은 주로 구청 해당부서로의 이첩사항이며 각하민

원은 동일사항에 대해 감사원의 직접조사가 있어 조사제외 처리한 사항이다.

옴부즈만에서 직접 조사한 민원은 복지 분야의 민원이 많았고 구청의 처분에 대해 옴부즈만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다. 조사는 현장 확인과 민원인 및 관련 직원 면담, 관계 서류 검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의견의 유형이 권고, 의견표명, 감사요구 등으로 분류되어 서대문구청에 조치를 통보하게 된다.

1-2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건수	민원 분야													
		건축 주택	도시 계획	재개발 재건축	도시 교통	환경 청소	공원 녹지	복지 행정	일반 행정	재무 행정	도로 관리	하수 관리	노점 영업	보건 위생	문화 체육
2011년 (6~12월)	5	4	1	-	-	-	-	-	-	-	-	-	-	-	-
2012년	72	8	-	7	13	7	1	1	10	4	6	2	7	5	1
2013년	126	10	-	18	28	16	9	-	12	7	9	3	11	3	-
2014년	97	11	1	13	22	25	3	1	8	-	13	-	-	-	-
2015년	65	16	4	11	9	13	2	-	7	-	3	-	-	-	-
2016년	44	14	1	5	4	1	4	-	14	-	1	-	-	-	-
2017년	58	20	1	4	13	5	2	-	3	-	5	1	2	1	1
2018년	51	22	-	8	1	3	5	3	2	-	2	2	1	2	-
2019년	35	14	-	4	4	3	1	1	8	-	-	-	-	-	-
2020년	57	23	-	1	3	1	7	3	7	2	4	1	-	5	-
계	610	142	8	71	97	74	34	9	71	13	43	9	21	16	2

분야별 민원 접수현황을 볼 때 2020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전체

57건 중 건축·주택분야(23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며 불법증축, 용도변경, 신축건축물의 위법사항 확인요청 및 공동주택 분쟁이 주요 사례이다.

1-3 옴부즈만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 %)

구분	조치의견	조치 결과					수용률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진행 중	
2011년 (6~12월)	3	3	2	1	-	-	100%
2012년	17	17	17	-	-	-	100%
2013년	18	18	18	-	-	-	100%
2014년	12	12	8	4	-	-	89%
2015년	11	11	11	-	-	-	100%
2016년	18	18	18	-	-	-	100%
2017년	23	23	21	2	-	-	95.6%
2018년	22	22	18	4	-	-	90.9%
2019년	9	9	6	2	1	-	81.4%
2020년	5	5	4	1	-	-	93.3%

* 수용률(%) 계산 시 수용은 1, 불수용은 0, 일부수용은 1×(수용건수/조치의견건수)를 적용하였다.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가 일부수용인 건은 조치의견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한 건의 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옴부즈만의 여러 건의 조치의견 중 일부만 조치이행이 있어 완전 수용되지 않은 사항이다.

2. 2020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1 고충민원 창구별 접수건수 및 처리기간

총계	창구별 접수 건수			처리 기간(일)		
	청렴포털 (인터넷)	방문	구청장 부의	평균	최대	최소
57	57	0	0	25	3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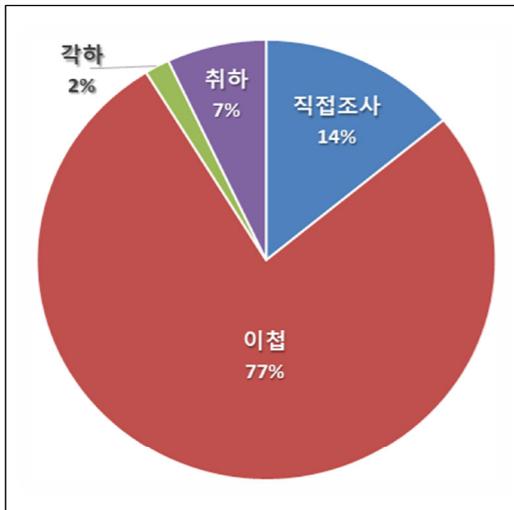
※ 처리기간 계산은 읍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에 한함.

2-2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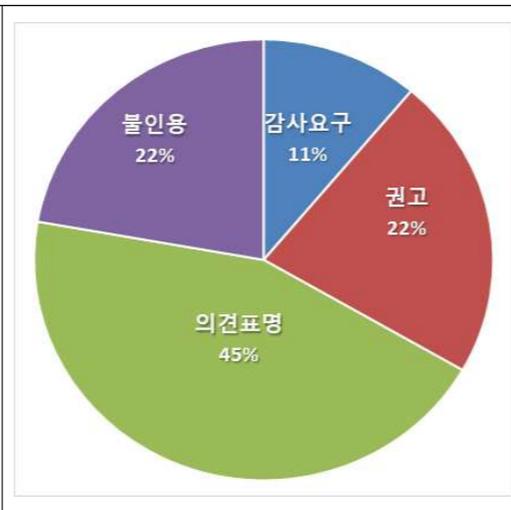
접수 건수	직접조사								기타				
	계	조치의견							계	이첩	단순 안내	각하	취하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 중					
57	8	1	-	2	4	-	2	-	49	44	-	1	4

☞ 고충민원 직접조사 건수 계(8)와 조치의견별 합계(9)가 다른 것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이다.

<민원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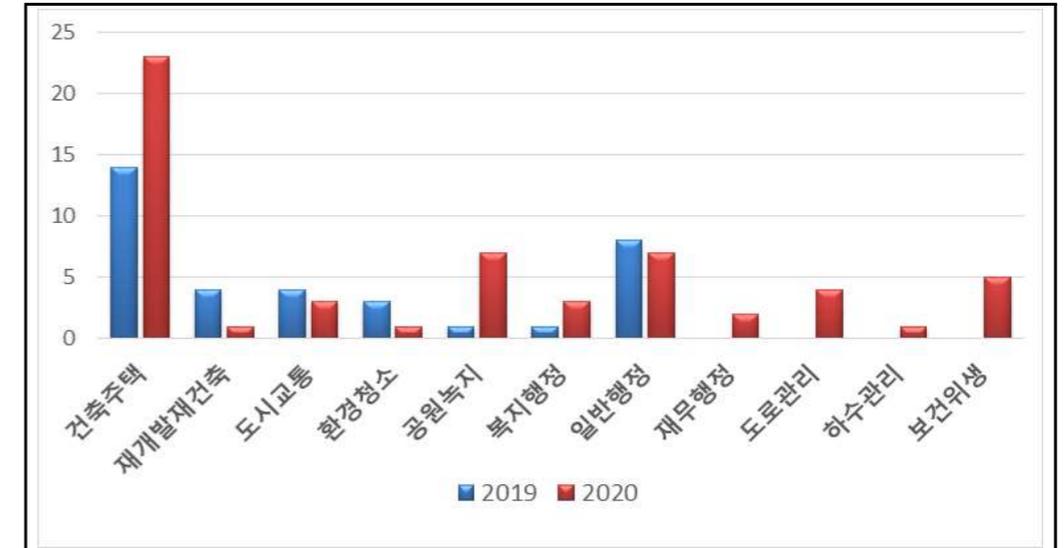


<직접조사 (8건)>



2-3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접수 건수	고충 민원 분야													
	건축 주택	도시 계획	재개발 재건축	도시 교통	환경 청소	공원 녹지	복지 행정	일반 행정	재무 행정	도로 관리	하수 관리	노점 영업	보건 위생	문화 체육
57	23	-	1	3	1	7	3	7	2	4	1	-	5	-



2-4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계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수용	일부 수용	불 수용	수용	일부 수용	불 수용	수용	일부 수용	불 수용				
5	4	1		1	1	-	2	2	-	4	3	1	-

☞ 조치의견 계(5)와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의 합계(7)가 다른 것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이다.

2-5 고충민원 조사처리 현황

① 조치유형 ⇨ 감사요구

연번	민원요지	읍부즈만 의견 요약	구청 수용여부
1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관련 비리개입 의혹 확인 및 시정요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의혹 관련하여 관련자의 비위여부에 대해서 별도 감사 바람	수용

② 조치유형 ⇨ 권고

연번	민원요지	읍부즈만 의견 요약	구청 수용여부
1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관련 비리개입 의혹 확인 및 시정요구 <상기 감사요구 건과 동일건>	수탁자 선정 시 관계법령이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공고내용 변경시 수정공고 절차진행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수용
2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사인물 제작설치 공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시정 요청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라 수급인 재선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순 없지만, 추후 유사 공사 진행 시 관련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후 입찰 참가자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수용

③ 조치유형 ⇨ 의견표명

연번	민원요지	읍부즈만 의견 요약	구청 수용여부
1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훈련생 지원 자격을 만 61세로 제한한 것이 고령자 고용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	이미 교육생을 선발하여 실무교육 진행 중이라 이를 되돌리긴 힘들 것이나, 향후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선발제외 대상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것	수용
2	도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 및 담당자들 업무에 대한 시정 요구	담당자는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바람	수용
3	홍제3동 내부순환도로 입구 주변 문화공원에서 청소년들이 흡연 등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한 대책 요청	해당 구간은 하절기에 이용이 증가되는 구간으로 지속적 순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안등 이동설치 등 관련부서 조치가 필요함	수용
4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관련 비리개입 의혹 확인 및 시정요구 <상기 감사요구 건과 동일건>	위탁운영법인 선정시 관내법인이나 신설법인에 대하여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일부 수용

④ 조치유형 ⇨ 불인용(이해설득)

연번	민원요지	읍부즈만 의견 요약
1	민원인의 집 맞은편 신축건물에 대해 창의 가림막 설치 요청하여 일부 설치가 되었으나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설치해 줄 것을 재요청	-두 건물이 인접대지에 접해 있지 않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 -신축건물의 건축주도 일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원만하게 해소하려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2	가재울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바닥이 페이고 갈라진 상태이니 하드코트로 변경요청	인조잔디와 우레탄 포장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6 기타 민원 처리 현황 (이첩, 취하, 각하)

① 이첩

연번	민원요지	처리 사항	담당부서(기관)
1	중국인 상대 면세점 휴업요청	이첩	지역건강과
2	아파트 벽허물기 공사 신고 파악요청	이첩	주택과
3	PC방 공용부분 불법 개조 신고	이첩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4	옥탑방 임대 불법 여부 확인	이첩	주택과
5	공장 운영 장소 위법성 확인 요청	이첩	건축과
6	계단 관련 불법건축물 확인 요청	이첩	건축과
7	누수로 인한 하수관 확인 요청	이첩	안전치수과
8	휴무 권고 미이행 헬스장 확인 요청	이첩	문화체육과
9	공원 내 운동기구 보수 요청	이첩	푸른도시과
10	백련근린공원 텃밭 사유화 항의	이첩	푸른도시과
11	신호위반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이첩	교통행정과
12	북가좌동 신축빌라 주차장 출입구 위치 조정요청	이첩	건축과
13	연희동 신축빌라 창문 가림막설치 추가요청	이첩	건축과
14	맨홀뚜껑 소음 처리 요청	이첩	서부도로사업소
15	불법 간판 철거 요청	이첩	건설관리과
16	산책로테크 보안등 설치 요청	이첩	푸른도시과
17	인접 주택 정화조 제거 요청	이첩	청소행정과

연번	민원요지	처리 사항	담당부서(기관)
18	민원전화 시 직원 성명 미공개 해명요구	이첩	행정지원과
19	직원 불친절 전화응대 신고	이첩	일자리경제과
20	보수공사중인 약수터 관리 요청	이첩	푸른도시과
21	비피해로 인한 옹벽 붕괴사고 처리요청	이첩	건축과
22	건물 내 흡연 확인 요청	이첩	지역건강과
23	코로나 방역점검 관련 해명요구	이첩	문화체육과
24	구청 연수 시 마스크 착용 요청	이첩	교육지원과
25	신연중 옹벽 옆 보도블럭 보수요청	이첩	토목과
26	홍제천 마스크 착용 요청	이첩	안전치수과
27	통학로 개선 및 과선교 착공 촉구	이첩	도시재정비과
28	별관 공사장 피해신고	이첩	행정지원과
29	공동주택 통신시설 적법설치 확인요청	이첩	주택과
30	서대문형무소 관리 요청	이첩	서대문도시 관리공단
31	공동주택 명칭 질의	이첩	주택과
32	보안등 점등 시간 조정 요청	이첩	토목과
33	공동주택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문제	이첩	주택과
34	공동주택 이동통신 중계기 이설요청	이첩	주택과
35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등 문의	이첩	주택과
36	공동주택 무허가 위반시설에 대한 방침문의	이첩	주택과
37	직원 월급 공개요청	이첩	감사담당관

연번	민원요지	처리사항	담당부서(기관)
38	청소행정과 직원의 업무처리 불만	이첩	청소행정과
39	공동주택 관리소직원 격려금 지급절차 문의	이첩	주택과
40	부당한 입찰자격 정정요청	이첩	문화체육과
41	구청 업무처리기준 문의	이첩	주택과
42	주택과에 실태조사 요청	이첩	주택과
43	독립문공원 운동기구수리	이첩	푸른도시과
44	이벤트 공정성 관련 문의	이첩	일자리경제과

2 취하

연번	민원요지	처리사항
1	유소년야구단 합숙 제지 요청	취하
2	구청의 업무처리기준 문의	
3	구청의 업무처리기준 문의	
4	임대차법 관련문의	

3 각하(조사제외)

연번	민원요지	각하이유(조사제외)
1	공동주택 계약관련 조사 요청	직접조사 결정하였으나, 감사원 직접 조사로 인하여 조사제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읍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제3호 참조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처리 결과

1-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감시 평가 대상					감시 평가 결과					
	계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계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특이사항 없음
2011년 (6-12월)	30	11	14	5	-	31	1	2	-	19	9
2012년	22	15	5	1	1	22	-	-	1	12	9
2013년	25	6	11	2	6	25	-	-	6	12	7
2014년	22	8	9	3	2	22	-	-	-	14	8
2015년	17	8	2	3	4	17	1	-	8	6	2
2016년	20	10	4	-	6	20	-	2	10	5	3
2017년	18	10	5	3	(7)	20	1	-	10	6	3
2018년	20	7	2	1	10	22	1	-	9	7	5
2019년	20	6	2	1	11	25	6	-	10	3	6
2020년	24	4	8	2	10	27	2	-	11	3	11
계	218	85	62	21	57	231	12	4	65	87	63

☞ 2020년 감시평가 대상 분류는 경쟁입찰(공사, 용역, 물품)과 수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상으로 전자공개수의(2인견적), 유찰에 의한 수의 건이다. 감시평가 대상 건수와 결과 건수가 다른 것은 한 건의 사업평가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이다.

2020년 청렴계약 감시평가는 경쟁입찰로 진행한 공사 4건, 용역 8건, 물품 2건과 수의계약 10건으로 총24건을 실시하였다.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 과정에 있어 입찰, 계약 체결, 이행 및 결과 등 전반에 걸쳐 감시평가 활동을 하였다. 사업 발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자격제한에 따른 입찰여부, 업체의 성실한 계약 이행여부, 사업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준공 후의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시·평가하였다.

1-2 읍부즈만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 %)

구분	조치의견	조치결과					수용률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진행 중	
2011년	22	22	20	2	-	-	100%
2012년	13	13	12	1	-	-	100%
2013년	18	18	17	1	-	-	97%
2014년	14	14	12	2	-	-	93%
2015년	15	15	13	1	1	-	90%
2016년	17	17	15	2	-	-	94%
2017년	17	17	15	2	-	-	94%
2018년	17	17	14	3	-	-	91%
2019년	19	19	15	4	-	-	90%
2020년	24	24	-	-	-	24	-

* 2013년도부터 수용률(%) 계산 시 수용은 1, 불수용은 0, 일부수용은 1×(해당 청렴계약 건의 수용건수/조치의견건수)를 적용하였다.

2. 2020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현황

연번	분야	사업명	부서명	읍부즈만 조치의견
1	공사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건축 기계설비)	행정지원과	권고
2	공사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A3구역 비탈면 안정화 공사	도시계획과	권고
3	공사	대현문화공원 정비공사	도시재생과	-
4	공사	자연사박물관 3층 공통공원 및 매표소 증축공사(건축.기계)	자연사박물관	감사요구 및 권고
5	용역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	여성가족과	-
6	용역	김현식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설치용역	문화체육과	-
7	용역	서대문구 도서관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민관협치과	권고
8	용역	2020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청소행정과	-
9	용역	2020년 관내 도로지하 공동탐사 용역	토목과	-
10	용역	남가좌동 좌원상가 정비사업 수립 용역	도시재생과	-
11	용역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생과	권고
12	용역	천연층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도시재생과	권고
13	물품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공사(정보통신) 통합배선반 구매 설치	행정지원과	권고

제 3 부 고 충 민 원 조 사 처 리

연번	분야	사업명	부서명	음부즈만 조치의견
14	물품	2020년 프린터소모품 구매	스마트정보과	-
15	수의	민간 빅데이터 구매	스마트정보과	의견표명
16	수의	2019년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추석 선물세트 구매	복지정책과	-
17	수의	2020년 서대문 정(情)담은 푸드마켓 설 선물세트 구매	복지정책과	-
18	수의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용역	문화체육과	-
19	수의	옥천교 등 12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토목과	권고
20	수의	2019년 옥상녹화 조성사업	푸른도시과	-
21	수의	2019년 사방시설 보수공사	푸른도시과	권고
22	수의	학교 내 수목 정비사업(상반기)	푸른도시과	의견표명
23	수의	창천문화공원 그늘목 식재사업	푸른도시과	감사요구 및 권고
24	수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관련 서버 교체	의약과	권고 및 의견표명

제1장 건축주택분야

• 33

1. 연희동 신축빌라 창문 가림막설치 추가요청

제2장 도시교통분야

• 37

1. 불법주정차 단속반 직원에 대한 항의

제3장 공원녹지분야

• 40

1. 가재울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바닥교체 민원

제4장 보건복지분야

• 44

1. 소공원 등에서의 청소년 일탈문제
2. 위탁법인 선정 민원

제5장 일반행정분야

• 58

1.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문의

제6장 재무행정분야

• 66

1. 부당한 입찰자격 문의

제1장 건축주택분야

1. 연희동 신축빌라 창문 가림막설치 추가요청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0. 7. 25.

나. 민원내용

민원신청인의 집 맞은편 연희동 ***-#번지의 신축건물에 대해 창의 가림막 설치 요청을 했으나 2-3층만 설치하고 4-5층은 베란다라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 베란다 가림막 설치를 다시 요청

[2] 조사

가. 현장 조사(2020. 8. 3. 월)

1) 위치 및 지적도

①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 위치는 사진1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

〈사진 1〉 위치도

② 민원 신청인의 집 위치와 지적은 도면 1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

〈도면 1〉 지적도

2) 현 상황

① 연희동 ***-#번지와 민원 신청인 집의 현장모습은 사진 2와 같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

<사진 2> 연희동 ***-#번지 현장

② 연희동 ***-#번지는 2020년 6월 9일 준공을 득하였다.

나. 조사

1) 법규 확인

- ①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 시설)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내용상동
- ③ 인접대지 경계선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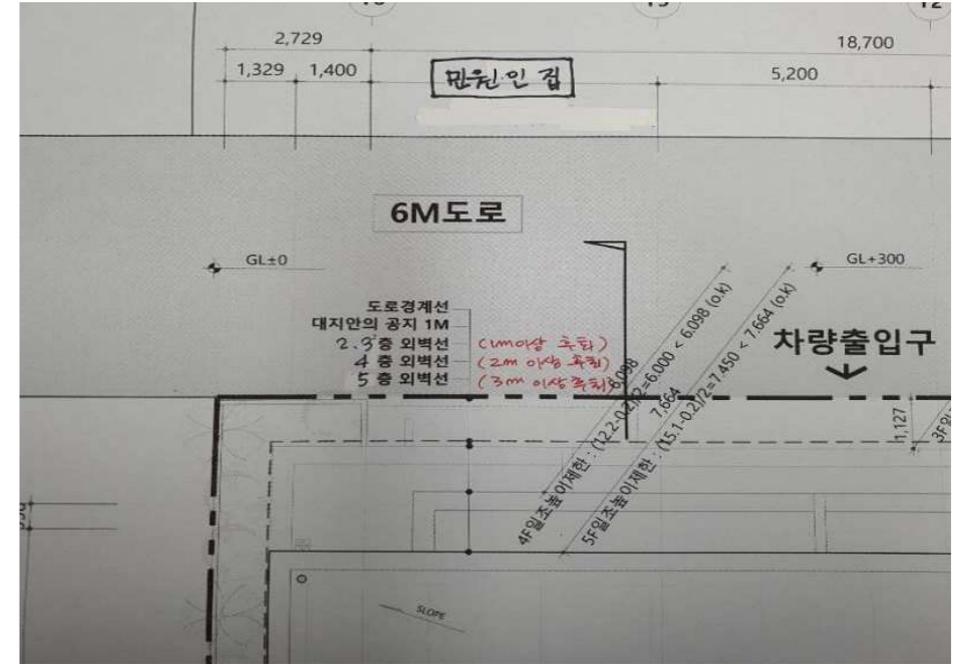
※ 적색
: 대지와 대지사이의 경계선 -> 인접대지경계선

※ 녹색
: 대지와 도로사이의 경계선 -> 건축선

<그림 1> 인접대지 경계선의 정의

2) 도서 확인

- ① 접수된 도서의 배치도를 보면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 ② 2, 3층은 도로의 수직방향 1m 이상 건축선에서 후퇴하였고
- ③ 4층은 2m 이상, 5층은 3m 이상 각각 후퇴함.
=> 4층과 5층의 건물과 건물 사이 실제 이격 거리는 최소 8m 이상임



<도면 1> 배치도의 해당부분

3) 현재는 2, 3층에 가림막 설치 되어있음

[3] 판단

- 가. 두 건물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접해 있지 않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55조와 민법 제243조에 저촉되지 아니함.
- 나. 그 동안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가 더 높은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민원신청인 측의 불편함이 야기되었지만, 신축건물의 건축주

도 2, 3층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함을 원만하게 해소하
려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2020년 8월 7일 오후 민원 신청인과 통화하여 설명하였고 조사결과 통지

제2장 도시교통분야

1. 불법주정차 단속반 직원에 대한 항의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0. 05. 11.(월)

나. 민원내용

- 1) ○○○ ☆☆번지 주변 도로 불법 주차
- 2) 담당자들의 업무 행태에 대한 시정 요구

[2] 조사

가. 현장 확인 결과[2020. 05. 21.(목)]

1) 위치

○○○ ☆☆번지의 위치는 도면 1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

〈도면 1〉 위치도

2) 현황

○○○ ☆☆번지의 주변 도로는 <사진 1>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

(a) 이면도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

(b) ○○○ ☆☆

<사진 1> ○○○ ☆☆번지에 관련된 도로

<사진 1 (a)>의 고개를 넘으면 우측으로 ○○○ ☆☆ 건물이 나오고, 이 도로 상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다.

나. 조사사항

1) 법률검토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이다.

2) 단속사항

2020년 5월 중 단속은 여러 건으로 확인하였다.

3) 관련 공무원 면담

민원인과 주차단속 관련 공무원과 의견의 불일치를 청취하였다.

4) 관련 부서의 의견

○ 우리구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 설치와 관련

→ 교통량이 많은 2차선이상 노선버스,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대상으로 주변의 도로여건,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흐름 장애발생여부, 불법주정차 위반 건수, 교통불편 민원 건수, 교통상황, CCTV설치지역 주변 주민동의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대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 위주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음.

[3] 판단

가. ○○○ ☆☆번지 주변도로는 주택가로서 주간 및 야간에 불법 주차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는 종래 주택에 대한 주차 대책 미비와 가구당 차량 소유 증가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나. 장기적으로 주택가의 주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하며,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바란다.

[4] 조치사항 : 의견 표명

담당자는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바란다.

[5] 부서 조치결과

해당 사항에 대해 2020년 5월 19일 현장단속직원에게 교통관리과 부서장이 업무 및 민원응대에 대해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0년 5월 28일 민원인에게 사과문자 발송

제3장 공원녹지분야

1. 가재울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바닥교체 민원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0. 11. 10.

나. 민원내용

- 1) 현재 가재울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바닥이 패이고 갈라진 상태입니다.
- 2) 하드코트로 변경해주세요.

[2] 조사

가. 현장 조사(2020. 11. 23. (월))

1) 위치

가재울 중앙근린공원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48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도면 1과 같다.



<도면 1> 위치도

2) 현 상황

- ① 배드민턴장은 사진 1과 같다.



(a) 배드민턴 전경



(b) 부분적으로 파손된 바닥면

<사진 1> 배드민턴장 전경과 바닥

- ② 배드민턴장은 두 코트이며, 바닥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다.

나. 자료 조사

1)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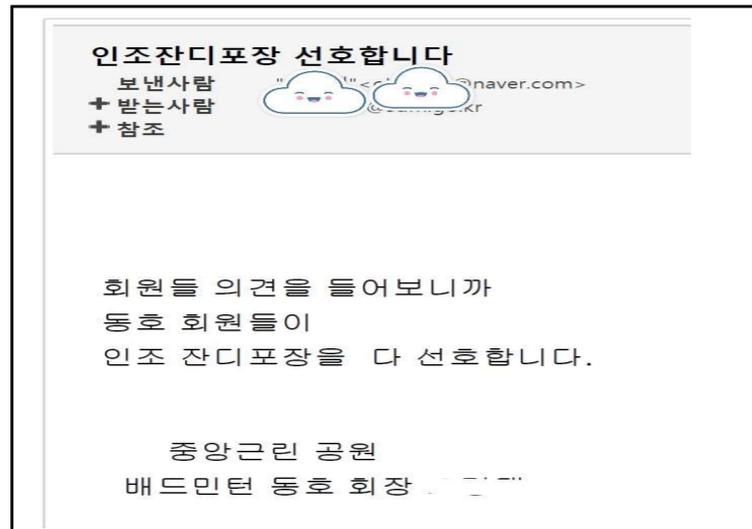
- ① 2014년 기부채납 (가재울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② 재산관리관 : 푸른도시과

2) 부서 의견사항

- ① 2014년 가재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후 공원으로 기부채납 (재산관리관 : 푸른도시과)
- ② 현재 상기 신청인의 민원 제기로 보수 공사 지연
- ③ 우레탄 바닥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닥 기초 공사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

3) 배드민턴 동호회 의견사항

- ① 「인조잔디 선호의견서」 전자메일로 송부



<전자메일 화면 캡처>

[3] 판단

가. 배드민턴장은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파손 된 곳이 있다.

나. 이 시설물은 가재울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14년 기부 채납된 시설물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 인조잔디와 우레탄 포장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인조잔디와 우레탄 포장의 공사비는 단기적으로 우레탄 포장비(기초콘크리트 포장비 포함)가 더 비싼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제4장 보건복지분야

1. 소공원 등에서의 청소년 일탈문제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0. 05. 21.(목)

나. 민원발생장소 : 홍제동 문화공원 인근

다. 민원내용

홍제3동 내부순환도로 입구에 위치한 문화공원에서 10~15명의 청소년이 거의 매일 모여 담배흡연과 자전거 후방등을 돌로 쳐서 떼어내고 주민들이 위압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요청 민원으로

- ① 내부순환도로 밑 가로등(보안등) 설치 요청
- ② 따릉이 자전거 보관대의 자전거 후방등 파손에 대한 요청
- ③ 청소년 흡연 등 계도 요청

[2] 조사

가. 현장 조사 일시 : 2020. 06. 05.(금)

나. 조사사항

본 민원은 관련부서가 토목과, 교통행정과, 아동청소년과로 해당부서와 처리의견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한다.

1) 내부순환도로 밑 보안등 설치 요청 (토목과 도로조명팀)

- ① 현장은 내부순환도로 고가 램프 구간으로 교량하부의 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4P <이설 예정 위치>의 위치로 보안등을 이동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② 현장 조사 시 민원인이 홍제배드민턴장 입구에 외등설치를 요구함

2) 자전거 후방등 떼어내어 파손 처리 요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① 현장 확인 결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따릉이) 보관대입

3) 청소년 흡연 등 계도 요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 ① 본 건은 동주민센터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매월 월례회의 시 활동 구간에 추가하여 선도하도록 조치가 필요함



<위 치 도>



<현 장 사 진 1>



<현 장 사 진 2>

[3] 판단

관련 부서와 현장조사 및 처리 의견을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관련사항 회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내부순환도로 밑 가로등 설치

교량 하부에 보안등 설치가 가능하므로 토목과에서 조도에 맞게 보안등

이동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이 추가로 현장에서 요구한 배드민턴 외등 설치는 시설관리 주체인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함



< 민원 요청 장소 >



< 이설 예정 위치 >



< 홍제배드민턴장 내부순환도로 진입로 사이 공간 >



< 홍제 배드민턴장 외등 설치현황 >

나. 자전거 후방등 파손 처리

따릉이 운영 주체인 서울시에 우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처리 요청통보 하였음 (2020.6.9.자 요청공문 기 시행)

다. 청소년 흡연 등 계도

1) 청소년유해환경 합동단속 실시

- ① 활동일시: 2020.6.15.
- ② 참여기관: 흥은지구대,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 연계 합동단속 실시
- ③ 활동내용: 홍제3동 주변 우범지역 순찰 및 계도를 통한 청소년의 일탈 행위 예방

2)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한 캠페인 및 계도활동 실시

- ① 활동일시: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이 있으나 상황이 완화 되는

대로 홍제3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캠페인 및 계도활동 실시 예정(월1회)

- ② 활동내용: 우범지역 청소년 주류·담배판매 순찰 및 업소 계도활동 등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본 건과 관련된 부서의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처리하며, 아울러 해당 구간은 하절기에 이용이 증가되는 구간으로 내부순환도로 하부 구간의 지속적 순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토목과

협의대로 보안등 이동 설치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추가로 요청한 배드민턴장 외등 설치는 시설관리 주체인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처리

나. 교통행정과

따릉이 운영 주체인 서울시에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처리 요청하여 기 처리하였음 (2020.6.9.자)

다. 아동청소년과

협의대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속적인 계도 활동 요청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

[5] 부서 조치결과

가. 토목과

교량 하부 LED 45W 보안등기구 2개소 설치완료

나. 교통행정과

서울시에 2020.6.9.자 민원처리 요청공문 시행

다. 아동청소년과

2020.6.15. 구청, 서대문경찰서, 흥은지구대 합동 순찰실시 및 청소년지도협의회(홍제3동) 순찰 지역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 예정

2. 위탁법인 선정 민원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0. 9. 20. / 10. 7.

나. 민원내용

<2020. 9. 20.>

: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3개소)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에 있어 비리개입 의혹 확인과 처벌 및 시정요구

1) 공고문 삭제

1차 공고를 보고 7. 27. 서류접수 마감하였으나 1개 법인만 접수하여 재공고하였고, 9. 20. 현재 2개 공고문 모두 삭제되었으나 공고문 삭제 사유를 납득할 수 없음

2) 기 제출 서류내용 담당자 수정요구와 내용변경 인정 요구

이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구청 담당자가 수정을 요구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다시 ‘공고내용을 인정한다.’는 서약서 제출 요구

3) 이해 충돌이 의심되는 관계자가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

이번에 참여한 법인 중 ‘△△△△△△△△△△’은 홍제3동점에 선정되었으나

가) 위 조합 대표는 ‘(사)○○○○○○○○○○○○’의 부설기관의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임에도

나) 위 ‘(사)○○○○○○○○○○○○’의 위탁기관인 서대문구 ▽▽▽동 소재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센터장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다) 이는 구청 담당자가 위 사실을 알고도 심사위원에 선정한 것은 그들끼리 담합과 비리가 개입되었다는 정황

4) 3개 위탁법인을 모두 타 지역 법인으로 선정된 것 납득 어려움

지역 상황은 지역법인에 더 잘 알 텐데 전혀 배려가 없고, 홍제3동 선정 업체는 목적사업도 키움센터 위탁사업형이 아니므로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음

5) 신규법인은 모집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인가

가) 구성원이 공고내용에 적합한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력하게 점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전 배제하려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듦

나) 대형법인만 선정된다면 진정성을 가진 신규법인은 진입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속칭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식 아닌가요?

⇒ 1), 2), 3)항은 사실 확인, 처벌 및 시정조치하고, 4), 5)항은 위탁법인 모집에 배려 필요

<2020. 10. 7.>

: 담당부서의 민원회신이 ‘서류수정과 내용인정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해관계자가 심사한 것은 사실인데 불법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그들끼리 짬짜미, 불공정한 일처리, 그릇된 관행에 대한 묵인 방조하는 공직사회의 행태에 대하여 감사요구

※ 담당자의 해명이 거짓임을 법에 근거하여 증명해 줄 것

1) 공고문을 임의 삭제하고 선정결과 또는 삭제 사실

2) 공고내용과 다르게 서류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내용인정 서약서 작성요구

3)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

[2] 조사

가. 모집공고

1) 1차 공고 (2020. 7. 10.)

가) 모집대상 시설

연번	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정원 (예정)	종사자	비고
1	일반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가칭) 연희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129.66㎡	35명	3명 센터장1명 돌봄교사2명	구 임대 (개소예정일 2020.10월중)
2	융합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가칭) 홍제3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283.18㎡	70명	5명 센터장1명 부센터장1명 돌봄교사2.5명 조리사 0.5명	구 소유 (개소예정일 2020.12월중)
3	일반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가칭) 홍은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66㎡	24명	3명 센터장1명 돌봄교사2명	구 소유 (개소예정일 2021.1월중)

※ 각 센터별 위탁운영법인 별도 모집

나) 모집기간 및 접수

(1) 공고기간 : 2020. 7. 10. ~ 7. 27.

(2) 접수기간 : 2020. 7. 23. ~ 7. 27.

※ 각 센터별 신청접수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예정

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지원 내용

(1) 수탁기관에 장소 무상임대

(2) 연간 운영보조금 지원 등

라)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마) 수탁자 선정 및 심사결과 발표

(1)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사업계획 발표 등을 검토·심의하여 수탁자 선정

바) **심사항목 및 배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수탁자의 적격성(30점)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의 보유자산, 법인대표 및 이사회적 적합성, 해당법인의 사회복지운영실적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등

(3) 지역사회와의 협력성과 관계조성 능력(20점)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

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2020. 7. 23.)

(1)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복지문화국장) 포함 7명(나머지 6인은 외부)

(2) 집합심사 : 위탁법인 소개, 사업계획 등 설명 및 질의응답, 위원별 평가

(3) 선정방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평균 80점 이상 최고점을 받은 자를 선정.

아) 신청접수 결과 보고(2020. 7. 28.)

접수결과 홍은2동 우리동네키움센터에만 1개 단체가 접수하여 재공고하고, 재공고시 각 센터별 위탁운영법인 별도 모집 조항 삭제

2) 2차 공고(2020. 8. 19.)

가) 모집기간 및 접수

(1) 공고기간 : 2020. 8. 19. ~ 9. 11.

(2) 접수기간 : 2020. 9. 7. ~ 9. 11.

나. 신청접수 결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1) 신청접수 결과

	연희동	홍제3동	홍은2동
입찰업체 수	1	2	3 (1차공고 포함)

2)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0. 9. 17.

3) 심의위원 보안각서 제출

※ 심사위원은 심의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 제출

다. 담당부서 답신(2020. 9. 29.)

- 1) 공고문 삭제
 - 공고문은 공고사항 관리시스템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자동 없어지게 되어 있음
- 2) 기 제출 서류 수정요구
 - 가) 당초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이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구청 담당자가 수정을 요구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다시 ‘공고내용을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제출요구하고 제출서류를 담당자 수정요구한 사유는
 - 나)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출한 서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 요구하였으며 법인대표도 기재사항 오류를 인정하여 수정 제출함
 - 다) 2020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채용기준에 따라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센터장 및 돌봄선생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준수하도록 4개 신청 법인에 안내하고, 이에 맞추어 심사.
- 3)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관계자 심사위원 선정
 - 가) (사)○○○○○○○○○○의 위탁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의 센터장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선정
 - 나) 위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인 ◇◇◇◇◇◇◇◇ 센터장이 설립한 아동돌봄센터가 홍제3동 수탁법인으로 선정한 사유는
 - 다) 위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을 검토한 바 심사위원이 위 수탁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임.
- 4) 3개 위탁법인 모두 타 지역 법인으로 선정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 신청법인에 대한 지역제한은 없으며 공정하게 선정하였음
- 5) 구성원 평가가 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고 대형법인만 선정됨
 - 법인대표 및 이사회적 적합성 항목을 통해 4개 신청법인 구성원에 대해 평가, 홍제3동 키움센터 수탁자는 신생 조합임

라. 민원신청인과 통화(2020. 10. 5.)

- 1) 담당부서의 답변 내용은 변명에 불과
- 2) 당초 공고문에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담당자가 추후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 요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 공고 내용과 다르게 위탁시설 운영할 시설장 예정자를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님
- 3) ‘□□□ 아동센터장’은 홍제3동 수탁자로 선정된 수탁법인과 이해관계자로 공정한 심사에 큰 문제가 됨
- 4) 따라서 위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은 무효이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함

마. 민원관계자 회의(2020. 10. 12.)

- 1) 참석 : 음부즈만, 민원관계자 3명, 담당직원, 팀장
- 2) 회의내용
 - 가) 공고문 삭제
 - (1) 민원인측 : 전년도 키움센터 모집 공고문은 아직 게시되어 있는 등 많은 공고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유독 이 공고문만을 삭제한 이유가 의심됨
 - (2) 담당직원 : 시스템 상 공고기간 종료 후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일부러 삭제하진 아니하였음
 - (3) 전산담당자 : 공고문의 삭제는 담당자가 어느 때나 임의로 게시기간을 지정하면 게시기간 이후 삭제되는 것임.
 - 나) 기재출서류 수정요구
 - (1) 민원인측 : 시설장의 이력 등을 삭제하고,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와 ‘최근 3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기재란에 당해법인이 아닌 개인의 과거 실적을 기재하더라도 담당자가 이를 삭제 요구하는 것은 잘못

- (2) 읍브즈만 : 당초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평가항목’ 은 서울시의 공개모집기준에 따라 추후 시설장 등을 모집해야 하므로 이를 평가항목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는 수정공고함이 정당한데도 담당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참여법인에 ‘시설장 및 종사자는 추후 공개 모집’ 하라는 사실만 설명
- (3) 담당직원 :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작성 서류에 해당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도록 한 것

다) 이해충돌 의심자 심사위원 선정

- (1) 민원인측 : 동일 사단법인의 센터장이 심사위원이고 부설기관장이 심사대상이면 이는 서로 짜고 하는 것이고, 담당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됨.
- (2) 담당직원 : 위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법률적으로 검토한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위 심사위원과 심사대상법인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사전 인지하지 못하였음.
- (3) 읍브즈만 :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공정성에는 맞지 아니하는 것임.

라) 기타

- (1) 민원인측 : 본인은 서대문구에서 지역아동 관련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표창도 수상하는 등 사실이 있음에도 다른 지역법인들이 수탁자로 선정된 것은 이해가 안 됨.

[3] 판단

가. 공고문 삭제

공고기간 종료 후 공고문을 삭제한 것이 수탁업체 선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됨

나. 제출서류 수정요구

- 당초 공고문 중 심사기준 평가항목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평가항목에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의 평가’ 세부항목을 공고하였으나
- 1) 서울특별시에서 ‘우리키움센터 종사자 채용관련 기준을 공개모집으로 시달(아이돌봄담당관-3603, 2020. 3. 6.)하였으며, 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장 등을 공개모집 전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평가’ 가 불가하게 되자 종사자 평가대신 위 법인대표 및 이사회회 적합성 항목을 통해 구성원을 평가
 - 2)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평가’ 항목을 제외할 때는 수정 공고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수탁법인 선정이 시간상 촉박하다는 사유로 이를 참여 법인들에게 구두 설명으로 같음

다.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관계자 심사위원 선정

- 1) 당초 심사위원 중 1인으로 실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신청 법인의 대표와 같은 사단법인에 종사하는 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하여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해충돌에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고, 사회통념상 공정성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그러나 민원인은 흥은2동 키움센터 위탁자로 지원하였고, 이해충돌 의심자는 흥제3동 키움센터 지원자로 흥은2동 키움센터 심사 평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타 지역 법인으로 선정 및 대형법인에게만 유리

추후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시 민원인의 요구와 같이 관내 법인을 우대하는 방안과 의욕적인 신설 법인도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 종합 판단

- 1) 이건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게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평가’ 항목을 제외할 때는 심사기준을 수정 공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위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평가’ 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평가항목의 종류나 배점 등을 감안할 때 수탁법인 선정이 변경될 정도의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위탁법인 선정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 2) 이건 서울특별시의 ‘우리키움센터 종사자 공개채용’ 기준을 준수하려면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에 의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평가와 충돌함으로 이를 일치되도록 조례개정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앞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시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 등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철저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원인의 요구와 같이 관내 법인이나 의욕적인 신설 법인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 이건 관련자 비위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권고, 의견표명 및 감사요구

- 가. 아동청소년과는 앞으로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시 서울특별시의 ‘우리키움센터 종사자 공개채용’ 기준과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이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 나. 심사기준 등 공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공고 절차를 거치고 심사위원 선정은 오해 소지 있는 자를 배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권고)
- 다. 관내 법인이나 신설 법인에 대하여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의견표명)

라. 관련자의 비위 여부에 대하여 감사 바람 (감사요구)

[5] 부서 조치결과

가. 아동청소년과

향후 수탁자 선정시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공개채용 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외할 예정이며, 공고내용 변경시 수정공고 절차 준수 및 심사위원 선정에 주의하겠음.

나. 감사담당관

관계직원의 비위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자 공개모집시 공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공고의 형식을 갖추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기관경고(부서경고) 조치함.

제5장 일반행정분야

1.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문의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0. 5. 10.

나. 민원내용

- 1)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훈련생 지원 자격을 만 61세로 제한한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 이라 한다)’ 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
- 2)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선발제외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사업자도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
- 3)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행위를 2회 이상 행한 경우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호위반 2회’ 등을 하여야 제외되는 것인지, ‘신호위반 1회 + 중앙선 침범 1회’ 를 한 경우도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
- 4) 누산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

[2] 조사

가. 담당자 확인(2020. 5. 22. 월, 2020. 5. 25. 목)

- 1) 버스운전양성교육 모집대상 및 버스운전양성교육 신청서 상의 선발제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집대상

- 만 26세 이상 만 61세 이하 취업 희망자

- 서대문구, 은평구 거주자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버스운전자격증 소지 및 버스운전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버스운전양성교육 모집 공고 내 모집대상 >

선발 제외	<input type="checkbox"/> 재직자 또는 특수고용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input type="checkbox"/> 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이수 경력이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운전 경력증명서(전체 경력) 상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망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 14.1.1.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 - 누산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보복운전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단,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행위를 2회 이상 행한 경우에 한 함
----------	---

< 버스운전양성교육 신청서 내 선발제외 대상 >

2) 담당자 확인 사실

가) 본 사업은 지원자를 마을버스 운전자로 채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마을버스 운전자가 되려는 자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연령을 이유로 취업에 차별을 둔 것이 아니다.

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정년은 만 61세인 바,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본 과정에 만 61세 이상의 지원을 허락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다) 만 61세 이상자인 경우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촉탁직은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또는 시내버스) 운전자로 수년간 근무하였던 사람 중 일부가 적성검사를 통과하여 임명되는 것이다. 만 61세 이상자 중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마을버스(또는 시내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본 과정을 지원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바로 지원하여 임명될 수 있다.

라) 본 사업의 목표가 ① 현장 중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력난 해소, ② 청년, 조기퇴직자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③ 운수 종사가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한 양질의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이고, 본 공모사업을 규율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본 사업의 교육·훈련의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재직자보다는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 버스운전양성교육 신청서 내 선발제외 대상에서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행위를 2회 이상 행한 경우에 한 함’ 의 의미는, ‘신호 위반 2회’ 또는 ‘중앙선 침범 2회’ 또는 ‘과속행위 2회’ 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호 위반 1회 + 중앙선 침범 1회’ 를 한 경우에는 난폭운전 2회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어 실제 검토가 이뤄지진 않았다.

바) ‘누적 별점 40점 이상인 경우’ 의 의미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기를 제한할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4. 1. 1. 이후로 제한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운전 기간 전체 동안 받은 별점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어 실제 검토가 이뤄지진 않았다.

나. 법규 확인

1) ‘고령자 고용법’ 제1조(목적)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모집·채용 또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 사업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를 때 조합원들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 생일 달 말일이다.

제22조(정년 및 재고용) ① 조합원들의 정년은 만61세가 되는 해 생일 달 말일로 한다.
 ② 회사는 건강하고 근로실적이 우수한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면 촉탁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단, 재고용은 신규입사로 하되 수습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 사업조합 단체협약 〉

3)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 2(지역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의 위임을 받은 공모사업으로, 관련 법규인 ‘이 사건 시행지침’ 에 따르면, 본 사업은 ‘일반 지역·상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교육·훈련 사업’ 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행지침에는 동 사업의 취지상 교육·훈련의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재직자보다는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자영업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연매출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 함을 규정하고 있다(해당 영세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신용 회복지원 확정 승인 통보서 등으로 확인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누산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

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 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 간	271점 이상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3] 판단

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 사업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를 때 조합원들의 정년이 만 61세라고 하더라도, ① 만 61세 이상의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촉탁직으로 임명되는 점, ② 고령자 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 61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통과한다면 다른 연령의 운전자와 차이가 없다는 점, ③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4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공고는 고령자 고용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본 사업이 재직자가 아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나, 위 시행지침에서도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기만 하면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한 이 사건 공고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본 사업의 목표가 양질의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마을버스 운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운행을 해야 하는 바, 누산별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또는 난폭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를 선발 제외로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상 누산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되어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율하고 있는데, 난폭운전을 한 경우 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누산 별점 40점 이상인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공고는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발제외 대상 표현에 오해가능성이 없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가. 본 사업은 이미 교육생을 선발하여 실무교육이 진행 중이라 이를 되돌리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선발제외 대상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나. 정년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예. 마을버스 운전자의 정년, 마을버스 운전의 특수성 등) 지원자에게 정년을 제한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부서 조치결과

옴부즈만 조사결과를 마을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수행기관인 서울시마을버스조합에 알렸으며, 수행기관에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수용하여 진행하기로 함

제6장 재무행정분야

1. 부당한 입찰자격 문의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0. 12. 28.

나. 민원인 : 신경훈

다. 민원내용

- 1) 민원인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사인물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서대문구가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2) 이 사건 공사 담당자는 이 사건 공사는 옥외광고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금속류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업을 포함하고 있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25조에 의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임.
- 3)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옥외광고물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였다고 회신함.

[2] 조사

가. 담당자 확인(2021. 1. 4. 월, 2021. 1. 14. 목)

- 1) 이 사건 공사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채널사인, 지주사인 외 실내의 사인물류 제작 및 설치를 하는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에는 금속류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도 입찰참가자격에 포함시켰다.

- 2) 지난 감사원 대행감사시 아래 내용과 같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미등록한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1억 1,475만원으로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를 요구한 것이다.

□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 14건을 발주하면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미등록한 12개 업체와 총 2억7천만 원의 공사 체결

<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보고 >

나. 법규 확인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옥외광고물법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 규정에 요건을 준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전문공사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주력분야의 등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축공사의 예시
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웬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서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4)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는 발주자가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는 등 수급인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3] 판단

가. 담당자는 이 사건 공사가 금속류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업이 포함되므로 전문공사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거 감사원에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중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로 제한하였다.

나. 금속구조물 공사의 업무내용 및 건축공사의 구체적인 예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금속구조물 공사는 ①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②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③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가 ①, ②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③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③에 대한 건축공사의 예시로 옥외광고탑, 철재프레임 등을 들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사에 옥외광고탑, 철재프레임이 포함 혹은 이와 같은 수준의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 설계도면 및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공사는 안내표지판 등을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고 옥외광고탑, 철재프레임 등을 제작하거나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대행감사 역시 공사 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중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공사의 금액이 설령 1,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업 등록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위 감사의 취지와는 맞지 않아 보인다.

다. 한편,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급인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도 입찰을 하려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질의 제한이므로, 그 정도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공사는 안내표지판 등을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는 건설산업을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예비적으로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설치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까지 입찰 참가 제한으로 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평가된다.

라.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공사에 대하여 지난 6개월 간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확인한 결과 단 1 건만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발주자들은 수급인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필요최소한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 4 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4] 조치의견 : 권고

본 사업은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라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순 없지만, 추후 유사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축공사의 예시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입찰 참가 자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입찰을 하려는 자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그 권한을 필요최소한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5] 부서 조치결과

추후 유사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규정하겠으며 공사 발주시 수급인의 자격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음.

제1장 공사

• 75

1.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건축 기계설비)(2차)
2.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A3구역 비탈면 안정화 공사
3. 대현문화공원 정비공사
4. 자연사박물관 3층 공룡공원 및 매표소 증축공사(건축.기계)

제2장 용역

• 87

1.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
2. 김현식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설치용역
3. 서대문구 도서관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4. 2020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5. 2020년 관내 도로지하 공동탐사 용역
6. 남가좌동 좌원상가 정비사업 수립 용역
7.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8. 천연층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장기계속)(1차)

제3장 물품

• 126

1.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공사(정보통신) 통합배선반 구매 설치
2. 2020년 프린터소모품 구매

제4장 수의계약

• 132

1. 민간 빅데이터 구매
2. 2019년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추석 선물세트 구매
3. 2020년 서대문 정(情)담은 푸드마켓 설 선물세트 구매
4.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용역

- 5. 육천교 등 12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 6. 2019년 옥상녹화 조성사업
- 7. 2019년 사방시설 보수공사
- 8. 학교 내 수목 정비사업(상반기)
- 9. 창천문화공원 그늘목 식재사업
- 10.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관련 서버 교체

제1장 공사

1.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건축 기계설비)(2차)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건축,기계설비)(2차) ● 사업기간 : 2019.2월 ~ 2020.8월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 ● 위치 : 연희동 169-16 ● 사업비 : 3,360,252,000원 ● 현공정 : 1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5,870,235,940원 ● 계약금액 : 3,360,252,000원 (낙찰율 : 86.755%) ● 계약일 : 2019.7.12. (착수일 : 2019.7.14.)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구청청사의 규모가 특별시 자치구 기준(인구 50만명 미만 청사 기준 면적 26,368㎡)에 현저하게 미달(-8,026㎡)되고 교육지원과 등 5개 부서가 별관에 분산되어 행정의 집중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부서, 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구의회 청사 이전 계획이었던 연희동 169-16 자리에 청사를 신축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재배치하려 추진되었고, 설계 공모하여 지하2층·지상8층의 현재의 안으로 결정됨.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주계약자로 기계설비공사업체를 부계약자로 하는 공동도급 방식, 총액입찰, 건축 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86.745%의 조건으로 입찰 공고하여 △△△△(주)을 주계약자로 ▽▽▽▽(주)를 부계약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로 낙찰됨.

나. 공사 내용의 적정성

- 1) 건축분야 감리 용역입찰 공고하여 낙찰된 ○○○○○○○○○가 감리함.
- 2) 시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하고 감리는 현장상황에 맞추어 감리업무를 수행함.
- 3) 설계 시 사도를 고려하지 않아 오수관로가 사도를 통과하도록 계획하였고 사도 소유주의 동의 및 민원 등의 문제로 시공사와 부서, 감리등 담당자들이 협의하여 정화조의 위치를 지하 2층에서 1층 전면 야외정원 아래로 바꾸었으나 변경에 대한 경위서류가 없고 내역이 정산되지 않음.
- 4) 준공서류와 감리보고서 등이 잘 제출됨.
- 5) 5층 이상 옥상은 비상시를 위해 상시 개방되어야 하나 잠겨있음
- 6) 2~4층 발코니가 공중정원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준공도서에 창고로 변경되고 현재 물건 적재장으로 이용함. <참고- 사진1>
- 7) 4층 공중정원 난간벽의 방수, 계단의 도장 박리, 바닥 타일의 까짐 등 부실시공이 관찰됨. <참고- 사진2, 3, 4>
- 8) 건물 좌측 인접대지와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 채로 관리도 안 되어 쓰레기와 담배 궤초 등으로 방치된 부분이 있음. <참고- 사진5>



< 사진1-창고 >



< 사진2- 공중정원 난간 방수층 >



<사진3- 계단 도장부분>



<사진4- 바닥 시공불량>



<사진 5- 경계부분 축대>

[3] 종합판단

- 가. △△△△(주)을 주계약자로 하는 본 계약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나.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공사를 감리하게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다. 민원과 비용상의 문제로 정화조의 위치를 바꾼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변경과 승인에 대한 보고서가 없고 승인 후 내역이 정산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라. 화재 등 비상시를 생각할 때 옥상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마. 2~4층 공중정원의 용도가 경위도 없이 최종도면에 창고로 바뀌고 물건 적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바. 공중정원 난간벽 등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사. 경계를 꼭 명확히 구분 지어야하는 것은 아니나 담배꽂초 등이 투척되지 않게 계도하는 인식표시와 투척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 가. 정화조 위치 변경으로 바뀐 내역(펌프 설치, 굴착 및 배관선로 시공비 등)을 수정하고 금액의 변동 등을 검토 바람.
- 나. 옥상의 잠금이 건축법이나 소방법(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맞게 조치 바람.
- 다. 공중정원 난간벽 등의 하자를 보수받고, 공중정원의 용도가 창고로 변경된 것에 관한 서류를 갖추기 바람.
- 라. 건물 좌측 축대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A3구역 비탈면 안정화 공사

[1] 사업개요

사 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A3구역 비탈면 안정화 공사 ● 사업기간 : 2019.6.14. ~ 11.20. ● 사업내용 -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A-3블럭 동측 비탈면 보강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547,073,830원 ● 계약금액 : 477,766,800원 (낙찰율 : 87.754 %) ● 계 약 일 : 2019.6.14. (착수일 : 2019.6.19.) ● 발주방식 : 제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A-3블럭 동측 비탈면 일대 ● 사 업 비 : 470,536,000원 ● 현공정: 100% (2019. 11. 20. 준공)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7,230,800원 ● 준공정산 : 470,536,000원

홍은 2-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A3구역 비탈면 안정화 공사는 동측 비탈면을 안정하게 하는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 6호
-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 제4장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

2) 입찰자격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② 본 공사는 우리구와 특허보유업체와 특허공법(적층이 가능한 배면보강 판넬옹벽 및 배면보강 판넬옹벽 시공방법) 사용협약을 체결한 공

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특허 개발(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타당성

- 1) 암 깎기 229㎡, 흙 쌓기 및 헐기 4,454㎡
- 2) 보강 옹벽 393㎡

[3] 종합판단

- 가. 계약방법은 적정하나 입찰자격에 있어서 특허제품(공법)을 명시하였고, 이를 선정심사위원회(주택과-12176, 2019.04.23.)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나 특별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행위와 절차는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나. 횡단도면에 흙 쌓기 단면이 일정하지 않으며, MS Bolt 길이가 표시되지 않았고, 녹생토 면적 등 산출 근거가 횡단도에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흙깎기가 연암으로 산출한 바, MS Bolt 천공 구경이 100mm는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 가. 특별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조건에 특허제품(공법)을 명기하지 말 것.
- 나. MS Bolt, 녹생토 등을 횡단면도에 표기할 것.

3. 대현문화공원 정비공사

[1] 사업개요

사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대현문화공원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19.10.15. ~ 12.27. ● 사업내용 - 공원재정비 3,063㎡ ● 위치 : 대현동 146번지 일대 ● 사업비 : 365,123,000원 ● 현공정 : 100% (2019.12.26.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466,426,000원 ● 계약금액 : 346,511,000원 (낙찰율 : 87.778%) ● 계약일 : 2019.10.15. (착수일 : 2019.10.18.)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18,612,000원 ● 준공정산 : 365,123,000원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대문구고시 제 2016-172호)와 ‘대현문화공원 정비사업 용역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현동 146번지 일대 대현문화공원 정비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추진의 적정성

대현문화공원 정비공사는 시설공사(공원재정비 3,063㎡,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 재포장 등)와 부대공사(공원 조명, CCTV, 폐기물처리 등)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조경공사(조경 및 부대토목), 전기공사, 통신공사(CCTV),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리 발주하였다. 이 건은 이중 조경공사에 관한 계약이며 공사 내용은 수목 19종 및 초화류 22종 식재, 휴게시설, 조형가벽 설치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목공사, 철거공사	절토, 성토, 계단 바닥분수 철거, 교목제거 등
식재공사	측백나무, 능수백도화, 떡갈나무수국 식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단식의자, 스탠드, 계단 등, 화강석판석포장, 데크포장, 점토블럭포장 등
우·배수, 관수공사	집수정, 원형수로관, PE PIPE, QC밸브, 퇴수밸브 등

나. 계약의 적정성

1) 입찰참가 지역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사업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2) 낙찰자 결정

입찰결과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 업체(유)○○○○○○○을 적격심사, 낙찰자로 결정하고 위 업체와 계약(금액 346,511천원)을 체결하였다.

3) 설계 변경

동절기 공사 시행에 따라 수급 및 식재가능 수종으로 변경(사철나무 150주⇒400주, 증 250주)과 현장여건을 감안한 테크상부 테이블, 의자 등 변경 및 노출옹벽 차폐를 위한 가림막 설치 등 설계 변경하였다.(증 18,612천원)

4) 공기 변경

① 당초 : 2019. 10. 15. ~ 12. 16. → 변경 : 2019. 10. 15. ~ 12. 27.

② 사유 : 대현문화공원 내 YES APM 소유의 무대장치 및 분전반 철거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전반적인 공원레벨 조정 및 옹벽철거 등 추가공종이 발생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5) 식재공사 하도급

위 주요 공사 내역 중 조경식재공사(금액 73,621,217원)는 (주)▽▽▽▽에 하도급 실시하였다.

[3] 종합판단

가. 사업타당성

위 공원은 당초 어린이공원으로 고시되었으나 2009년도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기부채납한 공원으로 공원 공간구성은 전체가 건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성이 상당히 취약하였고, 건물입구레벨에 맞추다 보니 주변 지역과 단절되었으며 또한 시설률이 82.8%로 녹지가 현저히 부족하였다. 따라서 신촌도심재생 사업 일환으로 공원 내 포장 등 기반시설을 축소

하고 녹지 확충을 통해 주변과 단절되지 않는 녹색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위 사업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약의 적정성

이건 입찰제한(지역제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등)을 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계변경의 적정성

이건 감독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겨울철 수급이 어려운 초화식재 품종은 취소하고, 당초 생태식재 구간 중 일부 면적을 수목으로 변경하며, 공원이 용객의 접근성 등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자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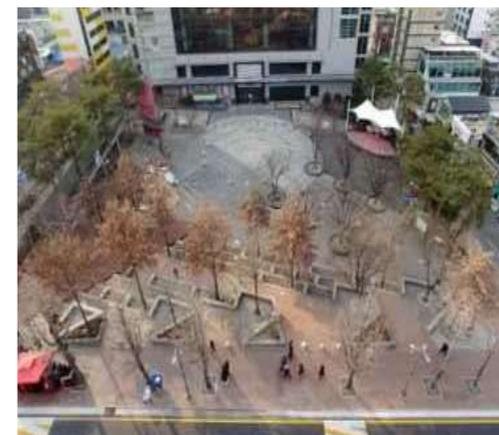
라. 지체상금

이건 준공기한 연기가 업체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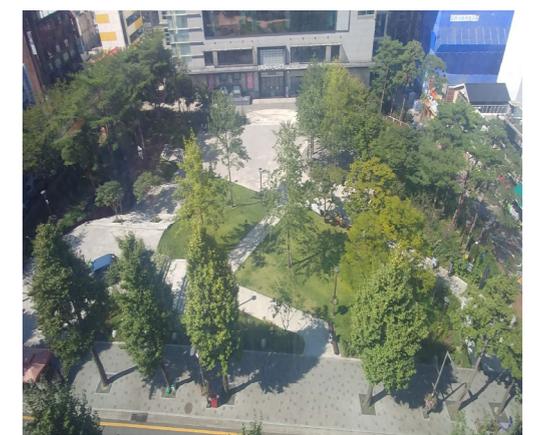
마. 하도급

이건 계약금액(346백만원) 중 직접 시공이(273백만원) 79%이고 하도급공사(73백만원)이 21%에 해당하고 하도급율(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액)이 92%에 이르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 전>



<공사 후>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자연사박물관 3층 공룡공원 및 매표소 증축공사(건축.기계)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자연사박물관 3층 공룡공원 및 매표소 증축공사(건축.기계) 사업기간 : 2020.5.6. ~ 10.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룡공원 및 매표소 증축공사 위치 :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사업비 : 465,232,810원 현공정 : 1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금액 : 531,742,000원 계약금액 : 465,232,810원 (낙찰율 : 87.753%) 계약일 : 2020.4.24. (착수일 : 2020.5.6.)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

개관 16년째인 박물관의 시설 노후에 따라 3층 야외공원의 실내전시관 증축, 매표소의 신축, 관람권 구매편의를 위한 캐노피 돔 설치, 향온향습기 구매 등으로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됨.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3층 야외공룡공원의 방수부실로 2층 전시장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전시물 훼손 및 관람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야외관람에 따른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방수와 소음을 해결하는 전시실 증축과 협소한 매표소로 인한 매표원의 불편 해소와 약천후 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매표소 및 캐노피의 증축이 필요함.

나.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 1) 예산의 조기집행과 긴급한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긴급 공고함
- 2)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주계약자로 기계설비공사업체와 공동도급, 총액입찰, 건축 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87.745%의 조건으로 입찰 공고하여 (주)△△△△△을 주계약자로 (주)▽▽▽▽를 부계약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로 낙찰됨.

다. 공사과정과 내용의 적정성

- 1) 시공시 건축부분 각 공정별 시공계획서 및 품질, 안전 계획서를 가지고 시공함
- 2) 감리의 선정 :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이 아닌데도 설계사와 같은 회사와 감리 계약함.
- 3) 2번의 설계변경에 관한 기록(감리업무 수행보고서)에는 있으나 1회에 대한 변경계약서(보고서의 날짜와 다른 9월 28일이 계약일)만 있고 관련 검토 서류를 찾을 수 없음.

[사업추진 경과]

번호	일자	내용
1	2019. 07. 26	건축허가(증축) 득
2	2020. 05. 14	착공신고 접수
3	2020. 05. 21	착공
4	2020. 08. 26	변경계약체결(1차)
5	2020. 09. 14	공기연장신청
6	2020. 11. 20	변경계약체결(2차)
7	2020. 11. 21	준공

< 표1-감리업무 수행보고서 >

- 4) 감리 계약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제출 서류를 납품받지 않았고, 준공 검사 시 감독공무원 경유 없이 준공처리 함.

※ 참고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¹⁾

- 5) 최종도면이 공사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1)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중 4) 공사완료보고

가)제출방법 : 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리용역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제출서류 ①공사완료보고서 1부, ②공사감리(중간완료)보고서 1부, ③공사감리일지 1부, ④유지관리지침서 1부, ⑤①~④서류 USB 1부

- 6) 현장 방문시 바닥의 평활도 문제와 금속 재료분리대의 훼손 등이 관찰됨.
- 7) 옥상에 전시되었던 전시물은 철거 후 1층 옥외에 잘 전시됨.

[3] 종합판단

- 가. 누수와 소음, 협소함과 악천후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본 사업의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방수공사의 특성상 긴급시행과 낙찰자 (주)△△△△△을 주계약자로 한 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특별한 모양이나 특수시공법이 포함되지 않는 설계임에도 설계사와 감리계약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라. 설계변경의 내용이 변경 계약서와 감리업무 수행보고서가 불일치하고 서류도 미비하여 타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마. 설계도면의 부정확을 최종도면에 반영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바. 준공검사 조서에 감독관의 확인이 없고 감리 최종 과업성과물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감리비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사. 공사시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감사요구 및 권고

- 가. 정확한 최종 도면을 제출받고 변경계약서, 준공조서 등 부실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기 바람. <권고>
- 나. 현장의 바닥 시트와 금속재료분리대를 보수할 것. <권고>
- 다. 준공조서에 담당자의 확인이 없는 것과 과업지시서의 제출 성과물을 제출 받지 않고, 감리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 <감사요구>

제2장 용역

1.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

[1] 사업개요

사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9.12.19. ~ 2020.12.18. ● 사업내용 -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80,000,000원 ● 계약금액 : 79,000,000원 (낙찰율 : 98.75%) ● 계 약 일 : 2019.12.19. (착수일 : 2019.12.19.)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서대문구 관내 ● 사 업 비 : 79,000,000원 ● 현 공 정 : 100 %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서대문구에는 2개의 외국인학교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9개의 명문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연희동으로 이전한 화교학교를 중심으로 화교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문화의 생소함, 이질감에 따른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결혼 비중이 높을 때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초등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중고생 비중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고,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인구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어 변화된 여건과 수요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본 용역이 추진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외국인유학생 및 화교가 많은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서대문구만의 차별화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내·외국인 학생의 갈등, 이주민과 선주민의 부정적 인식 심화해소를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 상호이해 방안을 마련하며 현황 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자료 등을 반영하여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등, 중장기 세부사업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하였고, 입찰참자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이후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2)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평가하였고, 정성적 지표는 아래의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평가기준(항목 및 배점)은 서대문구 계약실무 매뉴얼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연구용역 성격 및 타연구용역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정량적 지표 20점 중 용역수행능력, 관련분야 실적이 연구용역 추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인 6점과 5점을 할당하였고, 정성적 지표 70점 중 과업수행을 위한 방향 및 세부적인 조사계획 수립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가장 높은 배점(25점)을 할당하여 평가하였다.

정성적 지표 (70)	과업 연구팀의 과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성공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경력 등 보유 여부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지침, 계획 등 지식능력	15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과업목적, 방향,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과업내용에 부합하는 제안내용의 구성 및 방향 - 분야별, 단계별 세부계획 제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 제시 - 조사범위, 항목, 방법, 기간, 횟수, 분석지표 등 제시	25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추진체계, 추진일정, 분야별 인력배치 등	15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지원방안 - 추가 제안사항 등	15

위원장 등 7명의 평가위원은 5개의 발표업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각호의 전문성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인 21명) 그 중 제안서 제출자가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추천한 후, 추천된 인원 중 다빈도 순으로 결정되었다.

[3] 종합판단

가.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는 ① 참여인원의 구성인원, ② 용역수행 능력, ③ 관련분야 용역수행실적, ④ 경영상태, ⑤ 신인도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① 과업 연구팀의 과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②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③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④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을 평가위원이 상대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평가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의 구성 역시 서대문구 계약실무 매뉴얼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연구용역 성격 및 타연구용역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목적, 범위,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정성적 평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 △△△△△을 선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 △△△△△은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용역(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관련 계획 수립 및 정책 관련 용역수행건수) 수행 경험(실적) 등이 없어 정량적 지표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평가위원이 정성적 지표를 높이 평가하여 선정되었다(다만, △△△△△ △△△△△은 동북아시아의 이미지통합과 다문화주의,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황 조사 연구 등 유사 분야 용역은 다수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관련분야 용역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도 기회를 제공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사건 연구용역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주 부서에서는 이 사건 연구용역 결과물을 검토하여 발주 당시 원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구용역 결과가 좋지 않거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차후 이와 같은 용역을 발주할 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2. 김현식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설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개요

사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김현식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사업 ● 사업기간 : 2019.7.17. ~ 10.14. ● 사업내용 - 김현식 조형물 1점 제작·설치 ● 위치 : 창천문화공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9) ● 사업비 : 80,000,000원 ● 현공정 : 100% (2019.10.14. 설치완료)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90,000,000원 ● 계약금액 : 80,000,000원 (낙찰율 : 88.888%) ● 계약일 : 2019.7.16. (착수일 : 2019.7.17.)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지역기반의 매력적인 자원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음악의 거리에 김현식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행한 용역이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사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 1) 신촌을 중심으로 활동한 故김현식의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매력적인 자원 개발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및 소외계층 뮤지션 지원을 위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 2) 김현식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사업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스토리가 내장된 상징적이고 예술성 있는 조형물을 창천문화공원에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내·외 탐방객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등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중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조형물(6012100201)]를 소지하면서, 제안응모서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조형물, 또는 조각부문의 디자인 제작·설치 경력이 있는 업체 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전국 규모의 조형물 또는 조각부문 공모전에 출품하여 특선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였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이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 2)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지표 10점, 정성적 지표 7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평가하였고, 정성적 지표는 아래의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평가기준(항목 및 배점)은 서대문구 계약실무 매뉴얼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김현식 스토리텔링 골목길 추진위원회 및 타 공모 사업을 참조하여 기준을 선정하였다. 주제표현의 상징성 및 적정성, 디자인 의도 및 내용의 완성도, 조형물의 예술성 및 창의성, 미적 구성원리에 충실한 조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조형물의 안전성, 내구성, 견고성, 유지관리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

정 성 적 지 표 (70)	상징성	- 주제 표현의 상징성 및 적정성 - 디자인 의도 및 내용의 완성도	20
	예술성, 창의성	- 조형물의 예술성 및 내용의 완성도	10
	조형성	- 미적구성원리에 충실한 조형성	10
	조화성, 융화성	-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10
	안전성, 내구성	- 조형물의 안전성, 내구성, 견고성	10
	유지관리의 효율성	- 유지관리 사항의 적정성	10

위원장 등 7명의 평가위원은 6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를 차순위 협상적격자로 ○○○○○○를 선정하였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각호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사건 용역에서는 조각·조형물, 디자인, 관광, 도시건축, 공공미술)의 신청을 받아(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인 21명) 그 중 제안서 제출자가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추천한 후, 추천된 인원 중 다빈도 순으로 결정되었다.

[3] 종합판단

가. 이 사업은 신촌을 중심으로 활동한 故김현식의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매력적인 자원 개발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및 소외계층 뮤지션 지원을 위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다만, 추진단계에서 김현식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움직임 센서를 이용하여 김현식 노래가 송출되는 등 콘텐츠 가미’ 하려고 했던 계획은 노래송출은 음향이 좋아야 하는 등 부수적인 기능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부수적인 기능 보다는 조형물 제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의 상징적인 의미인 조형물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콘텐츠는 가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고, ‘버스킹 존 구성을 위한 앰프, 스피커 등 음향시설은 별도 설치’ 하려고 했던 계획은 음향장비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신진 뮤지션을 위한 버스킹 존은 음향장비의 제공 보다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본 사업 계획의 목적 중 하나인 소외 계층 뮤지션들에 대한 지원이 예정한 대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버스킹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소외 계층 뮤지션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장소가 많은 노숙자들과 취객으로 인하여 버스킹 공연을 하기 힘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음향시설은 대여 등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와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는 ① 사업 수행 실적, ② 공모전 수상 실적을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① 상징성, ② 예술성 및 창의성, ③ 조형성, ④ 조화성 및 융화성, ⑤ 안전성 및 내구성, ⑥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평가위원이 상대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평가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의 구성 역시 서대문구 계약실무 매뉴얼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연구용역 성격 및 타 연구용역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김현식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목적, 범위,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정성적 평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를 선정하는 것으로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김현식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 직후인 2019. 11. 9. 제5회 김현식가요제 수상자들이 버스킹 공연이 2회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문화관련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된 바 없다. 해당 지역은 노숙자와 취객들로 인하여 쉼터기능을 못하는 곳인데, 버스킹, 거리문화 콘서트 등은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조형물 등을 유지관리

하며 이 지역의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이후에는, 사업 추진당시 계획하였던 것과 같이 버스킹, 거리문화 콘서트 및 온택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서대문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 사업개요

사 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서대문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20.3월 ~ 7월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발전 미래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사 업 비 : 60,000,000원 ● 현 공 정 : 100 %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60,000,000원 ● 계약금액 : 60,000,000원 (낙찰율 : 100%) ● 계 약 일 : 2020.2.18. (착수일 : 2020.2.28.)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급변하는 사회 환경 대응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구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청렴계약 감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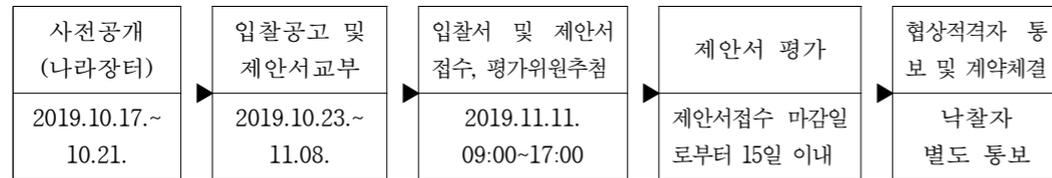
가. 용역의 타당성

- 1) 서대문구의 도서관 위치, 규모, 인력 및 예산 현황, 서비스 현황, 시설의 분석과 도서관의 통제(장서의 현황, 장서 증가추이, 장서의 이용현황)과 건립예정(시립도서관 분관, 구립도서관)사항을 분석하고
- 2) 도서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분석 및 진단과 도서관의 현황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향후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요 전망, 상기와 같은 사업의 목적을 위해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 추진하였다.

나. 계약의 적정성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용역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서대문구청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추진계획(문화체육과-29623, 2019.9.25.)에 따라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 선정(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하였다.

○ 입찰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2)

구 분		A업체	B업체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평가(20)	19.40	11.80
	정성적평가(60)	45.52	33.64
	소계(80)	61.92	45.44
입찰자격	평점(20)	17.79	20.00
	입찰자격	60,000,000원	53,361,000원
종합평점(100)		79.71	65.44
협상자문위		1(적격)	2(부적격)

※ 예산액 : 60,000,000원

다. 조사

- 1) 제안서 정성적지표 평가(위원용) 평가 결과 입찰참가업체 평가 예시1. “수” 로 평가 시 5.0 기재, 예시2. “우” 로 평가 시 4.5 기재 하도록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운영규칙

2) 2020.01.22. 문화체육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보고」 공문 참고

(시행 2016.4.20.)」 제6조(평가 점수의 산정) ①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2011.11.29.개정) ②점수를 별지4호 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제안서 「정성적지표 평가용(위원용)」 에 기재되어 있다.

- 2) 제안요청서(2019.10.) 3.정성적평가 : 평가위원회(7~10인)에 의한 평가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나) 최고점-최저점수가 2개 이상의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들을 산술평균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로 정상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 3) 평가 결과 2개 업체로 평가항목별 1단계(예: 수우 또는 우미) 차이가 정상적 기준이나 금회 평가에서는 수미(2단계차등) 또는 우가(3단계차등) 또는 수가(4단계차등) 등으로, 제안서 평가 시 입찰참가자 업체의 응찰자 업체수에 따라 평가 등급 배분평정 방법을 준수하여(차등평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차등을 지켜야하나, 라위원은 56:39.2, 마위원은 55:39.9, 다위원은 49.4:39 등 6명의 위원이 평가 등급배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본 용역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가 80%로 (A=61.92점, B=45.44점) 채점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2단계차등(수미), 3단계차등(수양), 4단계차등(수가) 등으로 평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종합판단

가. 용역의 업체선정 제안서 정성적지표 평가표(위원용)의 평가결과 점수를 보면 6명의 위원 중 3명은 수~양, 수~가 등 차등평가로 10점 이상으로

기술능력평가 비중이 80%로 낙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 용역은 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20%이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율이 80%로 제안서 정성적지표 평가 위원별 점수가 낙찰에 영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조치의견 : 권고

본 용역은 정상적 평가절차로 진행되었으나 업체 선정에 있어 업체 수에 따라 차등평가가 공정성 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번 용역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성문화하여 평가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붙임 1. 제안서 정성적 지표 평가표 1부.
- 2. 제안서 정성적 지표 평가점수 집계표 1부.

붙임 1

제안서 정성적지표 평가표(위원장)

□ 용역명 : 서대문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평가항목		배점	입찰참가업체 평가	
			A	B
과업수행계획 (20)	주요 과업별 과업수행계획 수(5.0점) 우(4.5점) 미(4.0점) 양(3.5점) 가(3.0점)	5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및 인력투입계획 수(5.0점) 우(4.5점) 미(4.0점) 양(3.5점) 가(3.0점)	5		
	추진일정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수(5.0점) 우(4.5점) 미(4.0점) 양(3.5점) 가(3.0점)	5		
	타기관 및 관련용역과의 상호 협력방안 수(5.0점) 우(4.5점) 미(4.0점) 양(3.5점) 가(3.0점)	5		
기술지식능력 (15)	과업수행관련 기술력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 수(5.0점) 우(4.5점) 미(4.0점) 양(3.5점) 가(3.0점)	5		
	국내외 전문인력의 활용계획 및 적절성 수(5.0점) 우(4.5점) 미(4.0점) 양(3.5점) 가(3.0점)	5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여부(과업보완 및 자문·협조) 수(5.0점) 우(4.5점) 미(4.0점) 양(3.5점) 가(3.0점)	5		
과업수행내용 (25)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수(6.0점) 우(5.4점) 미(4.8점) 양(4.2점) 가(3.6점)	6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전략수립의 적절성 수(7.0점) 우(6.3점) 미(5.6점) 양(4.9점) 가(4.2점)	7		
	제안내용의 논리성(체계성) 및 창의성 수(6.0점) 우(5.4점) 미(4.8점) 양(4.2점) 가(3.6점)	6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제안사항 수(6.0점) 우(5.4점) 미(4.8점) 양(4.2점) 가(3.6점)	6		
합계		60		

○○○○.○○.○○.

제안서 평가위원 성명 _____ (서명)

제안서 정성적지표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배점	가 위원		나 위원		다 위원		라 위원		마 위원		바 위원		
		A 업체	B 업체											
과업수행계획 (20)	주요과업별 과업수행계획	5	4.5	4.0	4.5	4.0	4.0	3.5	수	양	우	양	4.5	4.0
	과업참여자의 업무부담 및 인력 투입 계획	5	우	양	4.5	4.0	우	양	수	가	수	가	4.5	4.0
	추진일정 및 절차의 정체성 및 실현가능성	5	4.5	4.0	수	미	우	양	우	양	우	양	4.5	4.0
	타기관 및 관리 용역의 상호협력방안	5	4.5	4.0	4.5	4.0	4.0	3.5	우	양	수	양	우	양
기술·지식능력 (15)	과업수행 관련 기술력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	5	4.5	4.0	4.5	4.0	우	가	수	양	우	양	우	양
	국내외 전문인력의 활용계획 및 적정성	5	4.0	4.0	4.5	4.0	우	양	수	가	우	가	우	양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여부 (과업보완 및 자문협조)	5	4.5	4.0	수	미	4.0	3.5	우	가	우	가	4.0	3.5
과업수행내용 (25)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6	4.8	5.4	우	양	미	가	우	양	우	양	4.8	4.2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적량수립의 적절성	7	5.6	5.6	6.3	5.6	미	가	우	가	우	양	5.6	4.9
	제안내용의 논리성 (정체성) 및 창의성	6	5.4	4.8	우	양	미	가	우	가	우	양	4.8	4.2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제한사항	6	4.8	4.8	우	양	4.2	3.6	우	양	우	가	미	가
합계	60	51.6	48.1	55	46.2	49.4	39	56	39.2	55	39.9	51	42.9	

4. 2020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2020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연간단가) 사업기간 : 2020.1월 ~ 12월 사업내용 - 단독주택 등 수집한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위치 : 서대문구 관내 사업비 : 1,312,000,000원 현공정 : 1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금액 : 1,652,000,000원 계약금액 : 1,312,000,000원 (낙찰율 : 80.577%) 계약일 : 2020.1.1. (착수일 : 2020.1.1.) 발주방식 : 일반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

서대문구에서 배출된 혼합재활용품을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하는 (주)현대자원과의 계약기간이 만료(2019.12.31.)됨에 따라 전문성과 안정적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계약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에 의거 국제 입찰을 실시하였다.

〈세계무역기구(WH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
-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대상금액(추정금액) 6.3억원 이상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용역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적기 조달이 필요하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입찰공고) 제3항 제1호에 의거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입찰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 폐기물최종재활용,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중 영업허가를 필한 업체
- ② 용역의 수행장소는 서대문구에서 직선거리 40Km 이내 위치 할 것

3)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 ①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 ②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을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용역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 가격

- ① 톤당단가 : 118,000원(전년도 단가 동결)

<타 자치구 처리비 현황>

자치구	양천구	마포구	종로구	동작구	노원구	도봉구	광진구
2019년 단가 (원/톤)	119,820	119,000	145,000 110,000	133,000 143,000	110,000	115,000	108,000

- ② 계약금액(2019년도) : 1,652,000천원(118,000원 × 14,000톤 연간 발생량)

5) 계약체결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적격심사 후 계약(금액 1,312백만원, 톤당단가 : 93,714.2857원/톤)을 체결하였다.

[3] 종합판단

- 가.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용역은 서대문구에서 배출된 혼합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용역수행 장소까지 이송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을 40Km 이내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이견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단가(93,714.3원/톤)를 전년도 대비 20% 상당 낮추었으므로 향후 입찰에 있어서도 업체 간 담합으로 계약단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5. 2020년 관내 도로지하 공동탐사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0년 관내 도로지하 공동탐사 용역 ● 사업기간 : 2020.4.27. ~ 2020.6.11.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탐사(노면하부 공동) 연장 50km - 2차탐사(내시경조사) ● 위치 : 서대문구 관내 ● 사업비 : 71,708,200원 ● 현공정 : 100% (2020.06.11. 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82,000,000원 ● 계약금액 : 71,708,200원 (낙찰율 : 87.799%) ● 계약일 : 2020.4.24. (착수일 : 2020.4.27.)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2020년 관내 도로지하 공동탐사 용역은 도로 공동을 조기 발견하고 복구함으로써 차량 통행에 따른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용역임.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 1) 계약방법
 - 전자계약(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계약)
- 2) 입찰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0. 4. 10.(금) 18:00까지 등록한 업체로 한다.

나. 용역의 타당성

「지하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해 2020년 도로 지하공동탐사 용역을 발주함.

[3] 종합판단

- 가. 「지하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을 발주한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주)와 계약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나. 용역 후 등급별 공동은 우선복구 8개소, 일반복구 8개소, 규격미달 8개소로 확인하였고, 우선 복구 8개소 지역 중 7개소는 직접 굴착하여 조치하였다. 나머지 1개소는 공동이 작아 향후 지반 침하를 관찰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남가좌동 좌원상가 정비사업 수립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남가좌동 좌원상가 정비사업 수립용역(협상에의한계약 긴급) ● 사업기간 : 2020.5.8. ~ 2021.5.8.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딜 인정사업과 연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 위치 : 수색로42 일대 ● 사업비 : 195,500,000원 ● 현공정 : 9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197,250,000원 ● 계약금액 : 195,500,000원 (낙찰율 : 99.112%) ● 계약일 : 2020.5.6. (착수일 : 2020.5.8.) ● 발주방식 : 일반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남가좌동 좌원상가는 제3종시설물(안전등급 E등급) 지정(2020. 3. 5)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따른 ‘위해요소’를 위해 긴급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좌원상가 일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과 연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남가좌동 좌원상가는 50년이 경과한 노후 복합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E등급 판정으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2) 과업내용

- ① 남가좌동 좌원상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②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주민의사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 포함)
 -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계획
 - 임차인 보호대책
 -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주민홍보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명부 및 관리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처리 등

3) 낙찰자 결정

당초 입찰 참가자가 없어 1회 유찰하고, 추후 용역비 예산을 증액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입찰 참가한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외부 7인)의 평가(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결과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종합점수 1순위 업체인 (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종합판단

- 가. 이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 2(긴급시행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주도형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사업이다. 주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위험건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히 정비사업 용역을 추진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이건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건 국토교통부에 뉴딜 인정사업으로 신청하여 뉴딜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7.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2019.12.23. ~ 2020.6.19.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위치 : 대현동 121-2일대 ● 사업비 : 72,975,540원 ● 현공정 : 100% (2020.6.19.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82,962,000원 ● 계약금액 : 72,975,540원 (낙찰율 : 88.228%) ● 계약일 : 2019.12.23. (착수일 : 2019.12.23.)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신촌역 광장 일대 복합 문화시설 건립 및 녹지(공원) 조성을 시행하여 신촌 지역의 경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추진되었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긴급공고사유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그 밖에 ②,③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긴급 공고하였음
-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신속히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문화 혜택 조기 수혜를 위해 긴급 공고하여 추진하고자 한 사업임.

2) 입찰 참가 자격

- ① 입찰참가자격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도시계획, 조정)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 사무소(도시계획, 조정)를 등록한 업체
-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 마감일 전(2019.12.9. 18:00)까지 등록된 업체 (공동도급 부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 제한)중 낙찰되었다.

나. 용역의 타당성

신촌밀리오레, 신촌 박스퀘어와 연계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촌복합민원센터 일원 복합 사업과 함께 신촌을 문화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추진되었다.

1) 과업 대상 범위

- ① 위치: 신촌기차역 광장 (서대문구 대현동 121-2번지 일대)
- ② 계획범위: 복합문화센터 연면적 2,750㎡ (도서관 1,650㎡, 생활문화센터 1,100㎡, 공원조성 등 5,504㎡ 등)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업무협의를 및 공정보고서제출

3) 각종 보고

- ① 착수보고 :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
- ② 월간 정기보고서 (다음달 5일까지)

- ③ 중간 보고서 (공정 30%, 50%, 70%, 90%) 또는
- ④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 ⑤ 수시보고
- ⑥ 주민설명회 위원회 자문 등 성과물(안)에 대한 의견청취
- ⑦ 관련기관 등 협의추진 : 최소 2회 이상
- ⑧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 준공 예정일 15일까지 용역 성과(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 후 인쇄 및 성과 납품
- ⑨ 기타보고 : 설계공모 지침서는 과업 종료 1개월 전까지, 경제성검토 자료 등 투자심사자료는 미완성본이라도 발주처가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4) 자문단 구성 운영결과

- 본 사업의 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구성, 추진되었다.

- 자문단구성 : 외부 전문가 (도시재생위원회) 3인 및 공무원 각 3명 (총6명)
- 자문단 운영 결과

① 착수보고회 (2020.1.16.)

- 비용, 편익 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 및 도시계획 관련 검토
- 건축물 공간계획, 예상 도입 기능, 프로그램 검토 및 기획
- 설계의 목표 및 방향 설정, 설계지침서의 작성, 개략 공사비 산정 등

※ 참석자 주요의견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 사업, 밀리오레, 박스퀘어 등과 연계방향 검토 필요
- 지속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차별화 및 특화된 콘텐츠 도입 필요
- 집객을 위해서는 랜드 마크 형태의 희소성 있는 시설 도입 검토 필요
- 설계공모, 공사 발주 사전절차 등 고려한 사업 추진 일정 재설정 필요 등

- ② 2차 보고회 개최 (2020.2.4.) ③ 3차 워크숍 개최 (2020.2.14.)
- ④ 4차 워크숍 개최 (2020.3.2.) ⑤ 5차 워크숍 개최 (2020.3.11.)
- ⑥ 6차 워크숍 개최 (자문회의, 2020.3.17.)

⑦ 중간보고회 개최 (2020.4.16.)

- 사업 대상지 입지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내역 보고
- 사업조성 기본 컨셉 및 평면 계획(안) 보고
- 도입 시설 및 프로그램 구성 예시 보고
- 기타 추진 보고

5) 서울시장 면담 · 사업추진 관련 건의

본 과업은 마무리 단계에서 시장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결과>

-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사업 市 추진방향검토
 - 서울시 관점에서 신촌 전체 요소요소 장점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경제·도시 재생 측면에서 검토 필요
 -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등 이 일대를 젊은이들의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 토지 무상사용 가능성 및 영구 시설물 설치
 - 지상부(광장)에 대한 무상사용 및 가설 시설물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지하부 영구 시설물 조성은 서울시 개발에 따른 제약 발생으로 부적절

<사업추진계획변경(안) - 주요 시설 변경>

(지상,지하) 광장 재조성 및 지하 공공보도시설 조성
⇒ (지상)광장재조성(녹지, 휴게 공간)

6) 용역의 추진내용

-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서울시장 면담 결과(2016.6.10.)추진 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① 추진일정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추진일정	관련부서	구분	추진일정	관련부서
시설결정	'19.9~'20.5	구 도시관리과	계약심사	'20.6	구 감사담당관
투자심사	'19.9~'20.5	시 재정균형담당관	입찰공고	'20.6~7	구 재무과
설계VE	'19.9~'20.5	구 계약심사과	설계용역 시행	'20.8~11	구 도시재생과
설계(공모)	'19.10~'20.5	시 도시공간개선단	공유재산 심의	'20.8~9	시 자산관리과
도시디자인 심의	'19.12	시 도시공간개선단	철도보호 지구 내 사업승인	'20.8~9	한국철도시설공단
예산편성	'19.8~12	구 기획예산과	공사 시행	'20.12~'21.6	구 도시재생과
공유재산심의	'20.1~4	시 자산관리과			
계약심의(공사)	'20.3	구 재무과			
BF예비인증	'20.4	(재)장애인개발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20.4	구 감사담당관			
사업부지 관계기관 협의	'19.9~'20.4	재산관리부서			

② 세부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총별	- 광장재조성(지상→4,328㎡) -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1층→1,349㎡)	-광장재조성(지상)
면적	- 5,677㎡	- 4,328㎡
주요시설	- 신촌역광장 및 경의 제4시설녹지 정비 - 지하보행로 및 지하광장 도서관, 카페 조성 등	- 광장 평탄화, 녹지·휴게공간 조성
사업비	- 11,298백만원 · 공사비 : 10,660백만원 · 설계비 : 586백만원 · 기 타 : 52백만원	- 1,117백만원 · 공사비 : 997백만원 · 설계비 : 65백만원 · 기 타 : 55백만원

[3] 종합판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긴급공고 및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도시계획,조경)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도시계획,조경)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시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전 실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추진이 축소(지하공공보도시설 1,349㎡)되어 광장조성(지상) 등으로 변경 추진(2020.6.10.시장면담결과)하여 당초 목적 시설물 설치가 축소됨으로 당초에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 효과가 저감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본 사업은 용역 착수(2019.12월)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사업의 원안 추진 여부에 따라 용역을 축소하여야 할 것이나 용역 준공단계(2020.6.10. 시장보고) 협의로 용역 성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본 사업은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9페이지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4)항」 관련기관 등 협의추진 최소 2회 이상 용역을 추진토록 되었으나 관련기관 협의 없이 진행하고 용역의 준공단계(2020.6.19.준공)에서 서울시장면담(2020.6.10.)의 결과에 따라 계획변경 됨으로써 당초에 지하공간 설치계획이 삭제되는 것으로 변경되므로 당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가.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 작성 때부터 관련기관 등 협의 추진 2회 이상으로 성문화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단계(2020.6.10.시장보고)에서 협의하여 사업내용이 축소되므로 당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향후 본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협의(상의계획, 유관기관 등)하여 추진할 것.

8.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1차)

[1] 사업개요

사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 사업기간 : 2020.1월 ~ 8월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 ● 위 치 : 천연충현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 업 비 : 185,000,000원 ● 현 공 정 : 1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185,000,000원 ● 계약금액 : 185,000,000원 (낙찰율 : 100%) ● 계 약 일 : 2020.1.2. (착수일 : 2020.1.2.) ● 발주방식 : 일반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천연동 충현동 일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 발주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이 19년 12월 계약 만료됨에 따라 동 용역을 장기 계속계약으로 추진하여 뉴딜사업 완료시까지 현장지원센터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코자 함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1) 추진 근거

-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③ 공동체 활성화용역 대가기준 개선 및 추진방안(서울시 주거재생과 - 7557호, 2018.7.2.)
- ④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계약방법 개선(안) 알림(서울시 주거재생과 - 4304호, 2019.4.9.)

2) 추진 경과

- ① 2017. 2.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2단계)선정

- ② 2017. 9. 15. ~ 2018. 9. 14. :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용역 계약
- ③ 2018. 8. 3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

■ 사업개요

- 사업명 :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 사업(일반근린형)
- 대상지역 : 천연동, 충현동 일대(약 291,780㎡ 영천시장~충정로역)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4년간)
 - 2018년 9월 ~ 2019년 9월 : 활성화계획 수립 기간
 - 2019년 10월 ~ 2022년 12월 : 마중물 사업 실행 기간
- 총 예산 : 25,000백만원(국비 40%, 시비 54%, 구비 6%)

- ④ 2018. 10. 22. ~ 2019. 12. 31. :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추진
- ⑤ 2019. 4. 9. :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계약방법 개선(안) 알림(시→구)

■ 주요내용

- 개선방안 :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차수계약 시행
 - 계약기간 : (당초)단기계약 1년→(변경)차수계약 3년(2020~2022년)
 - 소요예산(안) : 972백만원
- 사유
 - 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기간 발생
 - 인력 및 업체 변경시 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 발생
 - 비인기부서로 인식되어 고충 등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발생

3) 추진 내용

① 용역 개요

- 용역명 : 천연 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 용역범위 : 천연동, 충현동 일대 (독립문역~서대문역~충정로역) 약 291,780㎡(약 88,263평)에 대한 과업
- 용역기간 : 2020. 1. 2. ~ 2022. 12. 31.
- 총예산 : 약 972백만원(시비 90%, 구비 10%)
- 계약방법 :

- 장기 계속 계약 : 현장지원센터 공백 예방, 근무자 고용 안정 및 향후 진행되는 실행단계의 사업 실행력 확보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도시 계획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티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 기술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 결정

② 과업의 목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사업의 설계 및 실행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계획사업 간 상호 연계체계 수립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각 마을의 여건과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주민지원을 진행할 현장 중심적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운영
- 도시재생의 가치와 가능성을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주민교육, 간담회, 홍보 등 주민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자립기반 마련

③ 과업의 내용

-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세부사업 및 연계사업 실행 추진
-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지역자원 활용방안 모색 및 사업 기록화 등

④ 세부과업

- 5개의 큰 과업별로 세부지침이 주어짐

나. 계약의 적정성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충족하고

①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

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 받은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운영 위탁한 지역재생, 마을 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 관련 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④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⑤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⑥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⑦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중 하나를 갖추고 조달청 입찰자격 등록필한 자로

2) 공개경쟁입찰하여 두 업체가 입찰하였으며 제출한 제안서를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가 선정되고 협상에 의해 총차 2020.1.2.~ 2022.12.31. (총 용역비 972백만원) 중 1차 2020.1.2.~2020.8.31.(1차분 185백만원)을 계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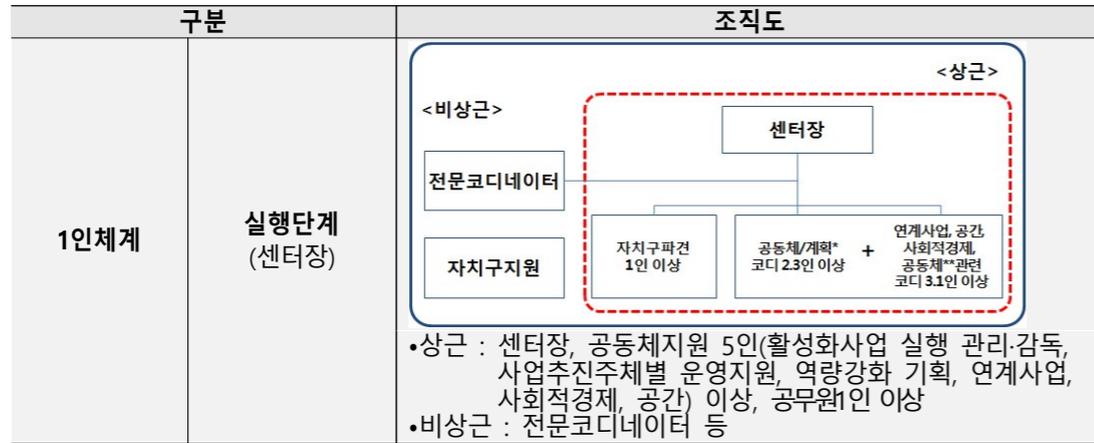
다. 용역 진행과 성과의 적정성

1) 지시 과업 및 성과

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상근인력 파견 및 상시주민상담 : 과업지시서에 최소 5.4인 파견 (중급 2.2인 초급 3.2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5인(중급 2인, 초급 3인) 파견함

[활성화사업 단계별 현장지원센터 조직도 예시]



서울시 지침-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2019.06.) 중

- 현장지원센터 운용을 위한 연차별 분기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전체를 끌여가는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단위사업의 진행 여부와 방향을 알 수 없음
-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월간, 연간 도시재생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도시재생 인지도 향상 및 참여도 증대를 위한 마을 총회 개최 추진
 - 월간 소식지 사기충천을 발간하고 SNS(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등에 업로드)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주민수(3만5천 이상)에 비해 참여율(2%이하) 및 시청구독률 (팔로우, 방문 포함 약3%)이 저조함.
 - 제3회 마을총회 개최함
- 센터장 및 사무국장, 자치구와 상시적 소통체계구축 및 업무협약 구조제시
 -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정기회의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협력

②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관련 단위사업 실행

- 타 단위사업 지원 : 용역 관련 단위사업(총 8개 사업) 중 골목거점사업과 경기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맞추어 각 단위사업을 진행함

■ 실적보고

- Ⓐ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 골목 거점 조성 1개 거점은 활용중이고 1개소는 거점마련 진행중
- Ⓑ 지역재생 기반구축 사업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모니터링 실시
- Ⓒ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 가꿈주택사업과 연계하여 노후주택 개선 지원, 20년도 33건 진행하였으며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실시단계 완공됨
- Ⓓ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사업 : 12개 골목길 재생사업 완료, 21년에 3개 골목길을 추가 조성 예정
- Ⓔ 걷기 좋은 생활 중심가 조성 사업 : 경기대로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연구용역 준공하고 사업 추진중
기본계획 연구시 교통분석의 데이터를 2017년 기준으로, 보행환경 설문조사시 총 44명의 응답만 확보함
⇒ 설문조사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신뢰도 95%수준으로 계산해 볼 때 천연동·충현동 주민이 36,000명이상이고 표본수가 44명이므로 표본오차가 15%나 되고, 이는 어떤 항목의 결과로 60%를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45%~75%사이가 되어 모집단의 신뢰도가 떨어짐. 만약 본 건의 설문조사에서 오차의 한계를 ±5%로 좁혀서 잡는다면 400명의 응답을 확보했어야함.
- Ⓕ 어울림공간 조성사업 : 교남지하 어울림공간 완공,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추진(지하 주차장)
- Ⓖ 골목상권 활력사업 ; 영천시장 거점공간 물리적 공간은 신축중, 운영주체 육성 및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 마을콘텐츠사업 : 대학-지역연계 사업을 공모하여 3개 사업(커피 로스팅 교육, 시그니처 상품개발, 지역상권(맛집) 답사 및 소개)으로 일자리 창출

- 전체 사업 및 사업별 공정표 작성 및 체계적인 공정 관리 시행 : 계획서에 월별 내용은 있으나 공정표는 작성되지 않음.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용역 결과를 본 용역의 공간적 범위에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에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을 꾀함
- 단위사업과 마중물 사업의 연계방안 제시 : 아카데미, 워크샵, [빈 점포 활용-지역크리에이터 플랫폼] 조성
- 주민설명회, 홍보회 등 대민활동 적극 참여 : 월간소식지 발행, SNS를 통한 홍보, 신문에 기사화, 찾아가는 설명회 포스터 부착 등
- 지역 내 주민조직, 관련기관,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총 10개 주민조직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강의 계획

③ 도시재생 체감도 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

- 주민 협의체 운영지원 : 현재 316명 회원, 6분과 활동 중 3차 총회(18년 발족 1차 총회) 개최, 운영위원회 13회 가짐
- 마을관리소, 거점공간 운영지원 : 골목통 공간지기 선정
 - 15건의 대관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용 못함.
 - LH청년인턴 커뮤니티(동강스) 운영중
- 주민참여사업 기획 및 지원 :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및 심화아카데미 기획 중 주민공모사업으로 9개팀 선정 및 지원
-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대상지 발굴 및 절차지원 : 가꿈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으로 109건 신청 받아 33건 선정, 30건 완공, 3건은 진행중이거나 시행예정

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업무 지원

- 변화를 반영한 실행성 검토 : 변화추이 분석 후 도시재생 현안 도출
- 골목거점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 등 세부사업 실행 시 주민 갈등 조정 및 협의 도출 : 골목거점1은 깨끗한 골목만들기 일환으로 재활용에 관한 재인식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거점4의 진행이 아직 미흡함.
-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 연 1회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함.

⑤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확보 지원

- 마을백서 작성 : 아카이빙이 9월 이전 종료되었으나 결과물 없음.
-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마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 심화아카데미 운영으로 마을 관리 그룹조직화 학습 - CRC (사회적 도시재생기업) 육성
- 주민공모사업 간에 연합 및 도시재생 단위사업과의 연계강화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공동체와 다양한 협업 중
- 조직체계(거버넌스 포함) 구축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의 발굴 및 지원

[3] 종합판단

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 발주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사업시행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세부사업의 설계 및 실행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계획사업간 상호 연계체계 수립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용역의 시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시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하여 제안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와 용역을 계약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용역의 과업지시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지 최소 5.4인 이상 파견을 조건으로 했으나 5인을 파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0.4인에 대한 비용을 용역사가 취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라. 실적 보고 상으로 볼 때는 단위사업의 성과도 있고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도시재생 체감도 증진을 위해 주민 협의체 운영지원, 주민참여 사업 기획 및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진행사항과 개별진행사항이 맞물려 진행하므로 전체와 개별사업의 연차별 계획과 공정표도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마. 주민의 참여(직접참여 및 관심표명)가 대상지역 인구의 약 3% 이내로 미흡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주위에 홍보용 영상을 상시 보여주는 등 더 적극적인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바. 경기대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 시점이 2019년 12월임을 고려 하더라도 교통분석의 데이터 기준이 2017년도인 것과 오차범위가 ±15%나 되는 결과를 적용한 보행환경 설문조사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 사. 변화를 반영할 실행성 검토나 세부사업 실행 시 주민의 의사반영이나 갈등조정 등을 생각할 때 년 1회의 모니터링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아. 장기계획임에도 각 차수별 사업이 종료되면 그에 따른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하나 아카이빙 결과물이나 과업지시서상의 제출내용에 맞는 결과물이 없이 준공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 가. 과업지시서에 지정된 상근직 인원(5.4인)과 실제 투입인원이 차이(0.4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액(9,716천원 상당)에 대하여 추후 정산하기 바람.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2차 용역도 6.7인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재 6인이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0.7인은 감액

정산 처리하기 바람.

아울러 3차 용역에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근직과 비상근직의 인원을 맞추고 비용의 사용도 그에 따라 집행하기 바람.

- 나. 현장지원센터 운용을 위한 연차별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전체 사업공정표 및 사업별공정표, 현황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바람.
- 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용역 준공시 분석의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하여 데이터는 최소 2년 이내, 설문조사의 경우 신뢰도 95% 오차범위 최대 5%이내를 반영한 결과물을 받기 바람.
- 라. 장기 계획이므로 이번이나 변화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년 2회 이상 모니터링,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여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주민에게 사업을 노출시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마. 마을백서의 결과물과 차수별 결과물을 제출받지 않고 준공 처리하였으므로 확인하여 조치바람.

제3장 물품

1.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공사(정보통신) 통합배선반 구매 설치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공사(정보통신) 통합배선반 구매 설치 사업기간 : 2019.9월 ~ 12월 사업내용 - 구의회 청사 통합배선반 구매 설치 위치 : 연희동 141-44 사업비 : 76,467,340원 현공정 : 100% (2019.12.9. 납품완료) 	<p>입찰 또는 계약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금액 : 92,028,000원 계약금액 : 81,021,300원 (낙찰율 : 88.684%) 계약일 : 2019.9.4. 발주방식 : 제한경쟁
	<p>계약 내용 변경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횟수 : 1회 (보험료 정산) 계약금액 증감 : △4,553,960원 준공정산 : 76,467,340원 	

본 사업은 서대문구의회청사(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구매품목³⁾과 같은 통합배선시설을 구매·설치하여 신축 청사의 정보통신 통합배선반을 구축하였음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서대문구 의회청사(복합청사) 건설에 따른 정보통신 통합배선 설치는 각 기능의 역할분담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물관리 및 이용과 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나. 계약의 적정성

1) 「지방계약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1항부터 5항까지

3) 구매품목

공량조정 : F.D.F 광탄자 인입 단위공량 2개, 110BLOCK 100p단위공량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지역입찰의 대상)에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경우(서울특별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본구매 0.8.억원)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관할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가능함(1항~5항 생략)
- ② 입찰결과 예정가격(금91,359,225억원)의 88.684%인 금81,021,300원을 응찰한 △△△△△(주)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③ 항목별 평점내역 : 해당물품의 납품능력(29.2점), 경영상태(29.2점), 신용평가등급(BBO), 입찰가격(60.74점 81,021,300원, 예정가격 91,359,225원), 신임도(2.25점), 종합평점(92.19점)으로 낙찰 선정되었다.

<적격심사결과>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92.19	
경영상태	30	29.20	
입찰가격	70	60.74	
신임도	수출우수기업을 제외한 평가	±3.2	2.25
	수출우수기업 평가	0.2	-
결격사유	-30	-	

[3] 종합판단

가. 물품구매(입찰)사전규격 공개 의견 접수 결과(행정지원과-16322, 2019.7.24.)에 의거, 물품구매 사전규격 공개의견접수에 따른 검토결과(건축과 회신, 아

래표),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을 토대로 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본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사유로 사전규격 공개접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구매 조치하였다. 그러나 ‘총사업비 14,682백만원,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사전규격 공개접수 의견을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품구매 사전규격 공개 의견 접수에 따른 검토결과(건축과)〉

연번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	검토결과
1	2.2.8. CABINET RACK 전력, 통신설비는 흔들림에 민감하여 그 기능 유지를 위해 관련 법규에 의거 내진대책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대하여 실 공고 시 면진테이블과 이중마루 등 내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을 검토 요청 드립니다.	서대문구의회청사(복합청사) 신축 건물은 내진설계 반영된 건축물이고, 본 통합배선반은 자가용통신설비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변경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본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설계 당시부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	통합배선반 해킹 보안 기능 강화	서대문구의회청사(복합청사) 신축 공사 설계는 지층, 방재실, 1층 MDF실은 출입제한구역으로 비인가 출입 차단, 지상 2층~지상4층 TPS실은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구조로 출입통제가 반영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현재 정보통신공사가 진행 중이며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변경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본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토대로 물리적 접근 차단 및 해킹방지 등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킹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설계 당시부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절차상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을 반영하여 구매물품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유지관리 상 동종업계의 의견으로 ① 내진대책 기준에 맞게 되어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대하여 실 공고 시 면진테이블과 이중마루 등 내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을 검토 요청 등) ② 통합 배선반 해킹보안기능 강화 등 사전공개 의견 접수하였으나,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는 「의견주신 내용을 토대로 변경하게 될 경우 추가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본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추후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설계 당시부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업비가 14,682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서대문구 의회청사(복합청사) 신축공사 추진계획 [행정지원과-7547(2018.04.03.)호] 방침서」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총사업비 14,682백만원,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및 활용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물품구매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에 따라 추가보완설계 시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물품구매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논리적 합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물품 구매 시 사전공개 접수의견(동종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진대책과 통합배선반 해킹보안기능 등 구매 시설물의 기능(내진대책과 통합배선반 해킹보안기능 강화) 등이 이행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하나 동종업계 의견을 형식적으로 절차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에 맞게 이행할 것.

2. 2020년 프린터소모품 구매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0년 프린터소모품 구매 (연간단가) ● 사업기간 : 2020.2.14. ~ 12.31.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프린터소모품 연간단가 구매 추진 -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 구매 비용 절감 - 구 분청으로 제한한 계약을 전부서로 확대 ● 위 치 : 전부서 ● 사업비 : 90,771,440원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107,555,480원 ● 계약금액 : 90,771,440원 (낙찰율 : 84.571%) ● 계약일 : 2020.2.14. (착수일 : 2020.2.14.)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이 건은 2020년 서대문구 전체 부서(동)에서 사용 중인 프린터소모품(△△ 등 : 토너, 드럼)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 부서에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신속한 조달체계 확립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약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발주방법의 적정성

이건 전산정보과에서 2020년 프린터 소모품 연간단가 품목 수요를 조사하여 연간 단가계약 대상을 토너, 드럼 등 204종, 2,746개(금액 528천원)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은 이를 제조사별로 다시 분류해서 ◇◇, ▽▽▽의 소모품 수요(85종, 예상수량 1,860개, 금액 419천 원)를 1그룹으로, 나머지 △△ 등 제조사의 소모품 수요(119종, 예상수량 886개, 금액 109천 원)를 2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 별개의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단위 : 개)

합계	A	B	C	D	E	F	G	H
2,746	1,521	339	672	51	10	5	139	9

이에 대하여 일상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업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검토 후 시행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산정보과에서는 하나의 업체에서 모든 제조사의 정품공급확약서 제출이 어렵다(2016년도에 위와 같은 사유로 1차 공고시 유찰되었고 이후 계약 변경에 따라 분리 계약함)는 사유로 당초 안대로 분리 발주하였다.

나. 계약 입찰

- (1) 본 계약입찰 공고를 하면서 제한경쟁(서울 소재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 84.245%)를 조건으로 부여하였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 (2) 개찰 1순위 업체인 ○○○○○은 일부 제조사로부터 정품공급확약서를 발급 받지 못해 포기하였으며, 2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도 일부 제조사로부터 정품공급확약서를 발급 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였다.
- (3) 적격심사결과 3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가 낙찰자로 결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종합판단

- 가. 이건 2020년 프린터 소모품을 제조사별로 분류하여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발주한 것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 한 바 프린터 소모품을 2개 그룹으로 발주하였는데도 입찰결과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에서 제조사로부터 정품공급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전산정보과 분리 발주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이건 총액입찰, 입찰제한(지역제한, 소기업)등을 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건 서대문구 보유 프린터 기종이 8개 다른 업체의 다양한 기종들로 부품 구입이나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프린터 구매 시 우수한 업체 수개를 정하여 집중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제4장 수의계약

1. 민간 빅데이터 구매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민간 빅데이터 구매 사업기간 : 2020.4.27. ~ 12.31.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S데이터분석시스템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 빅데이터 구매 - SKT 유동인구 및 현대카드 매출 데이터 사업비 : 58,800,000원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금액 : 58,800,000원 계약금액 : 58,800,000원 계약일 : 2020.4.27.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통신사 빅데이터를 구매·활용하고, 실무부서에서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유동인구, 카드매출 관련 빅데이터 분석 수요가 증가하며, 민간 빅데이터의 연간 데이터 구매를 통해 분석자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와 현대카드 매출 데이터, 기타 카드매출 데이터 업종 분류코드 데이터 및 인구유발시설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매하여 서대문구 GIS데이터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대문구 직원에 한하여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여 개인PC에서 추가 분석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구매·납품된 2년간의 데이터와 연속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분석 수행을 통해 정책 수립 및 업무 추진 결과의 시계열적인 수요·효과분석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민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

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구민공감 정책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지원 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모바일 빅데이터 공급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였고, 입찰참자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이후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2)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하였고, 정량적, 정성적 지표는 각 아래의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정량적 평가(20)	평가항목	배점
	1. 유사사업 수행실적	5
2. 참여인력 기술등급	5	
3. 업체 신뢰도	5	
4. 신인도	5	

정성적 평가(70)	평가항목		배점
	1. 과업의 이해도		5
	2. 추진계획의 체계성		10
	3. 데이터 활용성		10
	4. 제안의 차별성		15
	5. 관리조직의 전문성		12
	6. 사후관리		8

(주)△△△가 단독으로 입찰하였고, 위원장 포함 7명의 평가위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구분		배점	업체명 (주)△△△	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평가	20	17.75	
	정성적평가	60	57.20	
입찰가격평가		20	20	
합계		100	94.95	

[3] 종합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은, 최초 공고 시 (주)△△△만 단독응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지 않아 유찰 된 후, 동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이때도 (주)△△△의 단독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동시행령 제 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수의계약 시 단독응찰한 (주)△△△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체인지 최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한요청서 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바 이는 적절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구매한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직원 대상 실습교육을 상반기 1회(2일), 하반기 1회(2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집합교육이 금지됨에 따라 실습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민간 빅데이터를 구매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적극 활용하

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구민공감 정책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반기에 실습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교육가능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GIS데이터 분선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2019년 빅데이터 구매 계약도 (주)△△△와 진행하였고, 2020년도에도 (주)△△△만 단독응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다른 업체가 이 사건 사업에 응찰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여, 다음연도 공고시에는 입찰 조건을 개선하여 입찰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가. 직원 대상 실습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것.

나. (주)△△△만 단독 응찰하는 이유를 확인하여, 추후 공고 시 입찰 조건 등을 개선할 것.

2. 2019년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추석 선물세트 구매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2019년 서대문 정담은푸드마켓 추석 선물세트 구매 사업기간 : 2019.8.7. ~ 9.23. 사업내용 - 저소득층 푸드마켓 회원 대상으로 추석 선물세트 제공 사업비 : 26,883,250원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금액 : 30,780,000원 계약금액 : 26,883,250원 (낙찰율 : 88.024%) 계약일 : 2019.9.4. (착수일 : 2019.9.23.)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시설 또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및 위로하기 위하여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지원하여 풍성하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추석을 맞이하여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드마켓 회원 1,800세대에 대하여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해당물품 제조업 또는

관련 공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였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2) 2019. 9. 3. 개찰을 통하여 190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160개 업체가 낙찰하한선 이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160개 업체 중 최저가격 26,883,250원을 제시한 △△△△가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3] 종합판단

가. 이 사업의 낙찰 기준인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가 대상으로 결정된 바, 적절하게 진행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2020년 서대문 정(情)담은 푸드마켓 설 선물세트 구매

[1] 사업개요

사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2020년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설 선물세트 구매 사업기간 : 2019.12.24. ~ 2020.1.31.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푸드마켓 회원 대상으로 설 선물세트 제공 사업비 : 25,599,000원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금액 : 29,070,000원 계약금액 : 25,599,000원 (낙찰율 : 88.059%) 계약일 : 2020.1.17. (착수일 : 2020.1.31.)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시설 또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및 위로하기 위하여 설 명절 선물세트를 지원하여 풍성하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설을 맞이하여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드마켓 회원 1,700세대에 대하여 설 명절 선물세트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해당물품 제조업 또는 관련 공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

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였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29,083,350원)으로 한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2) 2020. 1. 16. 개찰을 통하여 64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37개 업체가 낙찰하한선 이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37개 업체 중 최저가격 25,599,000원을 제시한 △△△△△가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3] 종합판단

- 가. 이 사업의 낙찰 기준인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다.
-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가 대상으로 결정된 바, 적절하게 진행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용역 ● 사업기간 : 2019.10.22. ~ 2020.3.25.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의 정밀현황측량 및 실측도면 작성 ● 위치 : 서대문구 홍지문길 1-35 (홍은동) ● 사업비 : 34,000,000원 ● 현공정 : 100%(2020.3.25. 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38,632,000원 ● 계약금액 : 34,000,000원 (낙찰율 : 88.052%) ● 계약일 : 2019.10.22. (착수일 : 2019.10.28.)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 준공정산 : - 	

본 사업은 「국보, 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 관리 규정 제3장 정밀실측에 따라 정밀실측용역을 하고, 서대문구청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을 문화재청과 시행청이 공동소유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 1) 용역 및 공사계약 추진(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
- 2)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 보조 예산과목으로 확정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제외

나. 사업자 선정 방법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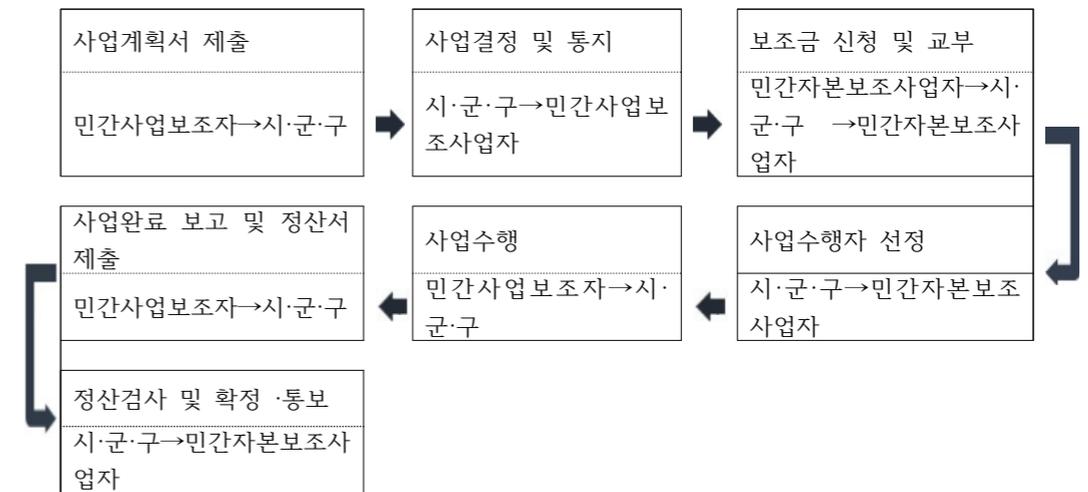
- 1) 지방계약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회의를 해 사업수행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 2)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정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방법을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또는 가격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다.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7인) 구성 운영>

- 위원장 : 1인 (자치단체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위원 : 6인 (문화재, 회계 등 관련 분야 - 7인, 관할 지자체 공무원 포함, 민간자본 보조사업자가 속해 있는 종교, 단체, 협회, 보존회 등 교구본사 2인 3개 이상의 견적)

<민간보조사업 수행절차>



다. 용역의 타당성

- 1) 본 사업은 2019문화재 보수정비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국비 70%, 시비30%)를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예산 과목으로 확장된 사업으로 계약 방법도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사업의 서대문구 홍제동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국보 제1820호) 정밀실측용역으로 절차와 성과품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종합판단

- 가. 국고보조금사업을 국비를 교부받아 간주처리 즉, 민간사업보조사업비로 예산비목을 처리하고 절차를 적절하게 거쳐 집행되었다.
- 나. 계약방법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절차 또는 민간보조사업 수행절차 (사업수행위원회 선정)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였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5. 옥천교 등 12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1] 사업개요

사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옥천교 등 12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2019.6.7. ~ 2019.10.29. ● 사업내용 : 보수보강 실시설계 ● 위치 : 옥천교 등 12개소 ● 사업비 : 28,406,700원 ● 현공정 : 100% (2019.10.29.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32,121,000원 ● 계약금액 : 28,406,700원 (낙찰율 : 88.389%) ● 계약일 : 2019.6.3. (착수일 : 2019.6.7.)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본 사업은 서대문 관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증대와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용역의 타당성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의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정비하였다.

나. 계약의 적정성

- 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정한 사업으로 계약심사 조정내역 (토목과-850, 2019.1.17.) 결과 적정하여 별도의 감액의견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 2)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한 구조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한 구조분야등록업체

[3] 종합판단

가. 본 용역은 도로시설물(옥천교 등 12개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반영된 보수·보강 방안의 경제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실시 설계하여 구조적 안전성 점검 및 안전 확보하여 구조물의 사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9년 ‘옥천교 외 2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감시평가에서 (「2019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보고서」 p100 [3] 종합판단 가항) ① 착수보고회, ②중간보고회, ③준공보고회 중 ①최초(착수)보고회만 실시하여 향후 조사 용역이 정량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금번 과업지시 내용에 심의는 4회 「9.기술자문(심의) 등 p.9」 ① 착수단계, ②기본설계 완료 후 ③마무리단계 ④설계 내용의 주요사항 변경될 경우 등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본 시설용역은 보고(심의)회를 준공(마무리단계) 1회 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업지시서 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과품 조사, 설계, 보수, 보강 등 공법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 용역 설계는 「옥천교 외 2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착공 : 2018. 9월, 준공 : 2019. 3월) 결과 「정밀안전 진단결과 보수·보강 보고서 중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개략공사비(손상수량 및 단가, 공사비 등)」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나, 본 과업은 옥천교 등 12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2019.6월 ~ 2019.10월) 실시하여 보수보강 공사(2019.11월~ 2020.6월 준공)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본 과업은 옥천교 외 2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시행 (2018.3월 ~ 2019.3월, 주식회사 시설안전연구원, (주)△△△△△△△)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가. 추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결과의 손상부위 보수우선 순위 및 손상부위별 공법 등 산출된 공사비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할 것.

나. 용역의 적정한 성과품을 얻기 위해 과업지시서에 보고회를 최소 3회(착수, 중간, 준공) 실시토록 하여 적정한 성과품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줄 것.

6. 2019년 옥상녹화 조성사업

[1] 사업개요

사 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19년 옥상녹화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9.10.10. ~ 12.9. ● 사업내용 : 옥상녹화 조성 ● 위치 : 서대문구 충정로 36 ● 사업비 : 85,178,000원 ● 현공정 : 100% (2019.12.9.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92,116,910원 ● 계약금액 : 82,282,800원 (낙찰율 : 87.834%) ● 계약일 : 2019.10.8. (착수일 : 2019.10.10.)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2,895,200원 ● 준공정산 : 85,178,000원

2019년 옥상녹화 조성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옥상녹화를 통해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공개수의계약

2) 입찰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된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1) 공사 내용

- ① 식재공 : 교목 및 관목
- ② 시설물공 : 그늘집, 목재데크, 앓음벽 등

2) 설계 변경

- 진입 데크 1식, 공원 안내판 1개소, 목재 데크 물량 49㎡ 증가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며, 이에 의하여 (주)△△△이 선정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늘집, 목재데크 등의 시설물공의 설치는 적절하며, (주)한국재해예방기술원의 「2019년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옥상녹화 조성사업 구조안전진단 용역 보고서」(2019.04.) p.50에 수록한 하중조건은 필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계 변경에 의한 진입 데크(1식), 공원 안내판(1개소), 목재 데크 물량 증가(49㎡)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7. 2019년 사방시설 보수공사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2019년 사방시설 보수공사 (홍은동 산*~***) 사업기간 : 2019.10.30. ~ 2019.12.19.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축혈기 45.6㎡ - 깎돌기습막이 84.6㎡ 위치 : 홍은동 산*~***) 사업비 : 36,321,000원 현공정 : 100% (2019.12.19.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금액 : 35,046,000원 계약금액 : 30,255,300원 (낙찰율 : 87.793%) 계약일 : 2019.10.28. (착수일 : 2019.10.30.)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횟수 : 1회 계약금액 증감 : 6,065,700원 준공정산 : 36,321,000원

2019년 사방시설 보수공사(홍은동 산*~***)는 석축 보수에 의하여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공사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공개수의계약
- 입찰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산림사업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산림토목)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 1) 석축 혈기 및 석축 쌓기 공사를 하였다.

[3] 종합판단

-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며, 이에 의하여 (주)△△△△이 선정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나. 석축 혈기 및 석축 쌓기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설계변경 위치는 홍제동 ▽▽▽-▽▽▽(푸른도시과-19852, 2019.11.25.)이었으나 수량산출서에 의하면 준공은 홍제동 ○○○-○○○ 석축 15㎡이었다. 적정한 사유가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석축 혈기 및 콘크리트 혈기에 있어서 준공도면에 표기한 수량은 수량산출을 위한 근거가 내재(단면도 등)되어야 하며, 준공 서류와도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석축 혈기로 발생한 물량은 유용 쌓기를 하거나 뒷채움재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서류가 없으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해 시공회사에서 임의 처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 가. 도면 및 산출서의 수량은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나. 석축 혈기에 의한 석축 물량을 최대한 재사용하기 바람.

8. 학교 내 수목 정비사업(상반기)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학교 내 수목정비사업(상반기) 사업기간 : 2020.1월 ~ 6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위험수목 및 대형수목 정비 (가지치기, 제거) 위치 : 관내 학교 25개교 사업비 : 103,489,900원 현공정 : 100% (2020.6.10.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108,386,000원 ● 계약금액 : 94,240,900원 (낙찰율 : 87.746%) ● 계약일 : 2020.3.11. (착수일 : 2020.3.13.)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9,249,000원 ● 준공정산 : 103,489,900원 	

구청장 지시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40개교)의 위험수목, 대형수목, 일반수목 중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위험수목에 대하여 정비와 수목관리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추진의 적정성

푸른도시과에서는 교육지원과와 협조 하에 정비수요를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량조사와 실측을 한 후 실시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예산 200백만 원을 확보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에는 1차 수요조사결과(희망학교 25개교)에 따라 위험수목, 대형수목, 일반수목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태풍 등으로 정비가 요구되는 수목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상반기에는 당초 예산(1억 원) 범위내에서 관내 학교 25개교의 수목약전지 209주, 강전지 118주, 제거 326주를 정비(총공사비 금108,386,000원) 하였다.

나.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공개 수의계약하였다.

2) 입찰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제한 하였다.

다. 변경계약의 적정성

당초 예산 제약으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수목 정비물량 등 학교에서 추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낙찰 차액(14,145,100원)을 활용하여 추가 공사(약전지 114주, 강전지 24주, 제거 118주)를 실시하였다.

[3] 종합판단

- 이건 사업추진의 타당성, 계약방법,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건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학교 추가요청 사항을 추가로 정비대상에 포함 시킨 것은 일응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산을 먼저 확정 후 추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비 필요 수량을 정확히 산정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경우 후순위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앞으로 수목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전 필요한 사업물량을 명확히 조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경우 후순위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9. 창천문화공원 그늘목 식재사업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창천문화공원 그늘목 식재사업 사업기간 : 2020.4월 ~ 5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팝나무 18주, 다년생 초화류 식재 위치 : 창천동 57-18 사업비 : 32,618,000원 현공정 : 100% (2020.5.18.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금액 : 33,803,000원 계약금액 : 29,667,800원 (낙찰율 : 87.756%) 계약일 : 2020.4.23. (착수일 : 2020.4.24.)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횟수 : 1회 계약금액 증감 : 2,950,200원 준공정산 : - 	

도심 속 공원내 그늘목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함.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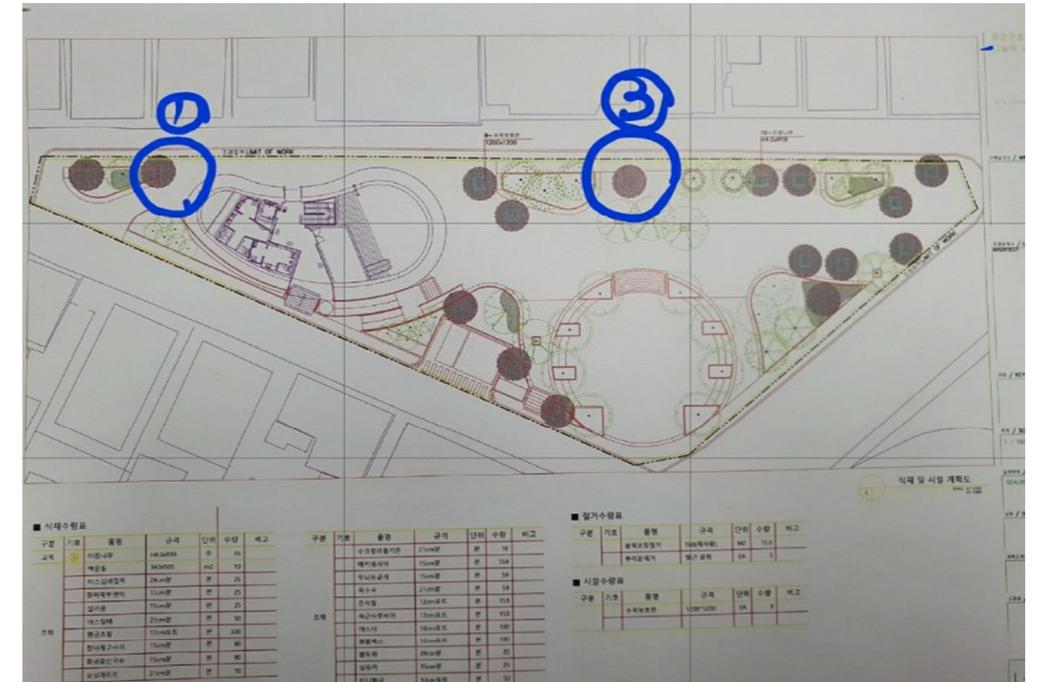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사업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적최저가 날찰하한율 87.745%의 조건으로 전자 수의 견적 제출 공고하여 △△△△(주)가 낙찰되어 계약함.

나. 시공 과정의 적정성

1) 설계의 적정성

- ① 다양한 수종과 적절한 단가로 자체 설계함
- ② 도면에 이팝나무의 위치가 있으나 초화류의 공사범위와 위치표시,

색상이 명기되지 않음.



<도면1- 설계>

2) 설계변경의 적정성

- ① 화단하부 구조물로 인한 식재의 불가로 이팝나무 식재위치 조정
- ② 관급자재인 수목보호틀 및 보호판의 모양상 삼발이 지주가 불가하여 일부(10주)를 사발이 지주로 변경
- ③ ①항목을 이유로 1주를 원형의자 쪽으로 식재하기로 하여 원형의자를 이설(811,704원)함.
- ④ 식재 시 초화의 수급상황과 개화기를 고려하여 품종 및 수량을 전체 변경하고 다른 항목도 대부분 변경됨.
- ⑤ 같은 수종의 수량이 변경되었는데 단가가 증가(숙근사루비아 150주 -->200본으로, 1,973원-->3,338원으로)되고 같은 수종을 경미하게 수고 증가(모닝라이트 21cm--> 24cm)시켜 금액이 증가됨.
- ⑥ 물품반입을 확인하고 초화류를 잘 식재하였으나 건설관리과 시설공사로 일부 훼손됨.

[3] 종합판단

- 가. 공고한 입찰조건에 의해 낙찰된 △△△△(주)와의 계약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나. 자체 설계하여 설계비용을 절약한 것은 고무적이거나 도면에 수목의 위치 뿐만 아니라 초화류의 색상과 위치명기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다. 화단의 하부구조에 의해 식재위치가 변경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원형의자 이설은 타당하나 이팝나무의 지주변경의 수량도 틀리고, 초화류의 내용이나 식생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역을 변경하고 특히 동일 품목에 대해 단가를 증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식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부서(건설관리과)의 공사에 의해 훼손되는 계획과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감사요구 및 권고

- 가. 푸른도시과는 자체 설계 시에도 배치도 등에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위치와 색상을 기재하기 바람. <권고>
- 나. 변경 시 내역서를 잘 확인하여 같은 수종의 증감에 단가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바람. <권고>
- 다. 담당자는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해당부서와 관련사에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준공 전/후 사진을 남기도록 하기 바람. <권고>
- 라. 공종이나 공법을 변경한 금액의 총액이 10%이상 변경하였지만 「감사담당관-1538 (2020.2.19.)호」에 의해 설계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 <감사요구>

10.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관련 서버 교체

[1] 사업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관련 서버 교체 ● 사업기간 : 2019.3월 ~ 9월 ● 사업내용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 교체 시행 	입찰 또는 계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금액 : 30,529,400원 ● 계약금액 : 29,000,000원 ● 계약일 : 2019.7.15. ● 발주방식 :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금29,000,000원 ● 현공정 : 100% 	계약 내용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서버의 노후화로 장애발생 빈도 증가 및 보안성 취약 문제로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시행함.

나. 계약의 적정성

1) 1차 유찰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을 갖추고 서울에 소재한 업체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나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세부품명번호 42203603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은 원제조사 공급사와 서대문구 간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제조사 공급사로부터 기술 지원 협약서(원본)를 발급받아 계약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함. - 위 조건으로 전자공개 수의 계약하려 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됨.

2) 2, 3차 유찰

- ① 2항의 자격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후 2회 재입찰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 변경하여 재 입찰함.
-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3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입찰자격의 변경 없이 재입찰하여야 하나 그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격의 범위를 넓혀 입찰 공고하고 단독입찰로 유찰 후 재공고 후 또 유찰됨.

3) 수의계약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 계약할 수 있음) 동법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입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주)△△△△와 (주)▽▽▽▽ 중 최저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해당 업체와 수의 계약함.

※참고사항
현재 서대문 구청과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원제조사 공급사는 수의계약업체임

- ② 수의 계약을 위한 비교견적제출 업체 (주)▽▽▽▽은 수의 계약업체의 종속회사임.
- ③ 비교견적서가 수량 및 아이템의 내용, 아이템별 금액조차 없이 제출되어 정확한 비교가 어려움

[3] 종합판단

- 가. 노후된 영상저장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이 사업의 시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나. 1차 유찰 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3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입찰자격을 소상공인에서 바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다. 수의계약대상 업체의 종속회사에서 비교견적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견적비교 업체에 사업에 대한 동일한 조건을 주고 수량 및 아이템의 내용, 아이템별 금액 등 동일한 내용의 비교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수량도 다른 비교 불가능한 견적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및 의견표명

- 가. 입찰시 지방계약법에 의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킬 것 <권고>
- 나. 수의계약을 위해 비교견적을 받을 때 견적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닌 업체를 택할 것 <권고>
- 다. 전산화 장비와 같이 세분화된 견적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아이템의 내용 아이템별 금액, 아이템의 큰 항목별 수량, 등은 동일한 조건에서 견적 비교할 것 <권고>
- 라. 단독 입찰로 1차 유찰된 기업도 입찰을 통해 본건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수의계약의 견적비교 시 유찰된 업체 견적도 비교를 고려해볼 것 <의견표명>

2020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보고서

2020년 3월 발행

발행처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주소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전화번호 02)3140-8301

홈페이지 <http://www.sdm.go.kr>

청렴신문고 <http://clean.sdm.go.kr>